

한국형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설계 가이드

해상풍력법 하위법령에서 실무까지

Ocean Energy
Pathway

협력 기관



ROOTENERGY



목차

핵심 요약	4
1 서론	7
1.1 목적과 범위	7
1.2 사례 연구 보고서와의 연계	8
1.3 보고서의 활용 방법	8
2 제도적 기반과 현행 한계	10
2.1 해상풍력법상 민관협회의 위상	10
2.2 현행 조례 및 지침의 한계	11
2.3 하위 법령에서 구체화해야 할 사항	12
3 국내외 사례 분석 및 설계 원칙 도출	14
3.1 국내 해상풍력 갈등의 구조적 요인 분석	14
3.2 해외 이해관계자 협의 모델의 시사점	16
3.3 민관협의회 제도 설계의 기본 원칙	17
4 한국형 민관협의회 운영 체계 설계	20
4.1 설치 시기·절차 및 권한 범위	20
4.2 위원 구성의 대표성 확보 및 선정 절차	21
4.3 회의 운영 방식: 의사결정 구조, 정보공개 및 의견수렴 절차	24
4.4 갈등 관리를 위한 단계별 조정 체계	26
4.5 이익공유 방안: 보상 중심에서 상생 모델로의 전환	29
5 하위법령 정비 방안	32
5.1 민관협의회 분쟁조정 방안	32
5.2 기본설계안 공개 및 의견수렴 절차	33
5.3 민관협회의의 구성	33
5.4 민관협회의의 운영	34
5.5 협의 결과의 공개 및 의견 수렴	34
6 결론 및 정책 제언	36

부록 A. 정부 제출 조문(안)	42
A.1 해상풍력발전위원회: 민관협회의의 분쟁조정 방안	42
A.2 기본설계안 공개 및 의견수렴 절차	46
A.3 민관협회의의 구성	51
A.4 민관협회의의 운영	54
A.5 민관협회의의 협의 결과 공개 및 의견수렴	58
A.6 해상풍력법 및 하위법령 개선(안) 3단표	61
부록 B. 민관협의회 운영 가이드라인(안)	70
B.1 총칙	70
B.2 민관협의회 설계	75
B.3 위원 구성	80
B.4 회의 운영	87
B.5 갈등 관리	91
B.6 상생방안	94
부록 C. 제정 하위법령과의 비교	99

핵심 요약

이 보고서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법)에 따른 민관협회의의 설계 원칙과 운영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입지를 먼저 정하고 지역사회에는 나중에 통보해 온 그간의 방식을 극복하고,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해상풍력법은 발전지구 지정 과정에서 민관협의회를 의무화하고 있다. 남은 과제는 하위법령 및 가이드라인의 설계이다. 즉 협의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운영하며,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의 문제이다. 현행 지자체 조례와 지침은 이러한 질문에 일관되지 않은 답을 제시하고 있으며, 대표성의 편차, 폐쇄적 운영, 전담 지원 조직의 부재라는 한계를 드러낸다.

이 보고서는 함께 발간되는 『해상풍력 이해관계자 협의: 무엇이 성공을 만드는가: 국내외 사례 비교 분석』에서 도출한 여섯 가지 구조적 요인을 바탕으로, 민관협회의의 설계 원칙을 제시한다(제3장). 이어 설치, 위원 구성, 운영, 갈등 관리, 상생을 포괄하는 운영 체계(제4장)와 함께 하위법령 및 가이드라인에 규정되어야 할 사항(제5장)을 제시한다. 부록에는 법령 조문(안)과 운영 가이드라인(안)을 수록하였다.

본 보고서의 권고사항은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정부에 참고자료로 사전 제시되었으며, 각 권고가 제정된 조문과 어떻게 대비되는지는 부록 C에 정리하였다.

한국형 민관협의회 운영 체계 설계

이 보고서가 제안하는 운영 체계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설치 및 권한: 예비지구 기본설계안 통보 후 3개월 이내에 설치하며, 지구 지정 및 이익공유 사업 구성을 협의하는 실질적 자문 기구로 운영한다.

위원 구성 절차: 제3의 전문기관이 수행한 이해관계자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지자체장이 최종 위촉한다.

위원 정수와 비율: 단일 지자체 20~25명, 복수 지자체 25~30명을 권장하고, 민간위원 50%, 전문위원 25%, 정부위원 25%로 설계한다.

의사결정 구조: 합의 우선 원칙을 적용하되, 교착 시 재적위원 과반 출석 및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3단계 갈등 조정: 협의회 내부 조정 → 상위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연계 →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재정(裁定) 절차 순으로 갈등을 관리한다.

사무국과 전문기구: 행정 지원과 실무를 전담할 상설 사무국을 설치·운영하고, 과학적 데이터 검증을 위한 분과위원회 도입을 검토한다.

상생방안 도출: 기초조사와 지역역량 분석을 거쳐 소득증대, 복지, 인프라 등 지역 수요에 기반한 참여형 상생 모델을 설계하고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잘 설계된 민관협의회는 협의 절차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해관계자 참여, 투명한 의사결정, 갈등 예방을 위한 구조화된 절차를 제공함으로써 해상풍력 개발의 정당성과 예측 가능성, 실효성을 높이는 거버넌스 제도다.

정책 권고사항 요약

이 보고서는 해상풍력법 하위법령과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6가지를 권고한다. 각 권고사항은 제6장에서 상세히 다루며, 이에 대응하는 조문(안)은 부록 A에 수록하였다.

01 사전조사에 기반한 공정하고 실효적인 협의회 설계 의무화

하위법령은 협의회 구성에 앞서 제3의 전문기관이 이해관계자 분석을 수행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02 상설적·독립적 지원 체계 구축

간사와 사무국, 과학적 검증과 상시 소통을 담당하는 전문기구, 주제별 분과위원회를 통해 전문성, 독립성, 지속가능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03 대표성 있는 위원 구성의 법제화

협의회는 20~25명으로 구성하되, 주민과 어업인에게 전체 위원의 약 50%를 보장하여야 한다.

04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의 운영 절차 보장

안건의 사전 공유, 회의록과 회의 자료의 공개, 명확한 의결 규칙을 명시하여야 한다.

05 3단계 갈등관리 체계 마련

명확한 단계별 갈등 조정 절차를 통해 교착 상태를 제도 내에서 해소하여야 한다.

06 실질적 상생방안의 제도화

보상에 그치지 않고 상호 이익에 중점을 둔 이익공유를 법정 핵심 안건으로 규정하고, 지속가능한 이행 거버넌스를 갖추어야 한다.



1 서론



1.1 목적과 범위

이 보고서는 해상풍력 민관협회의 설계 원칙과 운영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법)은 발전지구 지정 과정에서 민관협의회 구성·운영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위원 구성 방식, 의사 결정 구조, 갈등 관리 절차, 이익공유 설계 등 협의회의 구체적 설계는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다. 이 보고서는 그 하위법령 설계에 필요한 분석과 근거를 제공한다.

보고서의 범위는 민관협회의 제도 설계에 집중한다. 설치 시점과 절차, 위원의 범주·정수·선정 기준, 회의 운영과 의사결정 방식, 갈등 발생 시 단계별 조정 구조, 이익공유의 원칙과 도출 절차를 다룬다. 개별 사업의 기술적 쟁점이나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이 보고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본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시행령 수립 과정에서 정책결정권자에게 참고자료로 사전 제시되었으며, 이 보고서는 그 내용을 공개 문서로 정리한 것이다.

하위법령이 공포된 이후, 이 보고서의 권고사항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부록

C에 비교하여 정리하였다.

1.2 사례 연구 보고서와의 연계

본 보고서는 『해상풍력 이해관계자 협의: 무엇이 성공을 만드는가: 국내외 사례 비교 분석』 (이하 사례 연구 보고서)의 후속 보고서다. 사례 연구 보고서는 영국·일본·덴마크의 협의 모델과 국내 성공·갈등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협의가 실효성을 갖기 위한 여섯 가지 구조적 요인을 도출했다. 법적 강제력, 협의 시점, 조직 단위 대표성, 정보 투명성, 이익공유, 통합 시스템 설계가 그것이다.

사례 연구 보고서가 '왜 협의가 중요하고 무엇이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가'에 답했다면, 이 보고서는 '그 원칙을 민관협의회라는 제도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답한다.

1.3 보고서의 활용 방법

이 보고서는 세 개의 층위로 구성된다.

본문(2~6장)은 민관협의회 설계의 분석적 근거를 제시한다.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진단하고, 국내외 사례에서 도출한 설계 원칙을 정리하며, 한국형 프레임워크의 핵심 구조를 개관한다. 정책결정권자가 설계의 방향과 논리를 파악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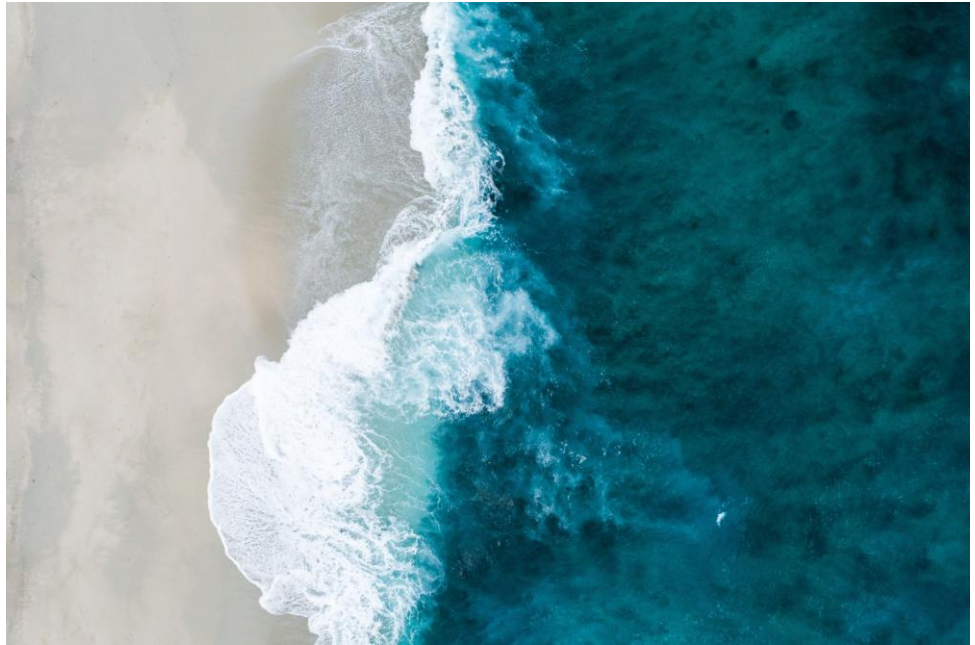
부록 A(정부 제출 조문안)는 본문의 분석을 법령 조문 형식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시행령 입법예고 이전과 그 기간 중 정책결정권자에게 제출한 내용이다. 그 제언의 기록이자 가이드라인 개발과 향후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조문 수준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부록 B(운영 가이드라인)는 민관협회의 설치부터 운영, 갈등 관리, 이익공유까지의 실무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한 것이다. 협의회를 실제로 구성·운영하는 지자체 담당자와 사무국이 현장에서 참조하는 실무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세 문서는 독립적으로도 읽을 수 있으나, 본문이 근거를, 조문안이 제도를, 가이드라인이 실무를 담당하는 하나의 체계로 설계되었다. 여기에 더해 부록 C(제정 하위법령과의 정합성)는 이 보고서의 권고가 제정된 시행령·시행규칙에 어디까지 반영되었고, 어떤 사항이 고시와 향후 법률 개정 과제로 남았는지를 영역별로 정리한 것이다.



2 제도적 기반과 현행 한계



2.1 해상풍력법상 민관협회의의 위상

해상풍력법 입법 취지

정부 주도 계획입지를 위한 해상풍력법이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되었다. 해상풍력법은 계획입지를 통해 기존 최대 29개 법률에 걸쳐 다수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복잡하고 장기간 소요되는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개별 사업자 주도의 입지 선정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했던 주민·어업인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해관계자 협의 체계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큰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법안에서 이해관계자 갈등해소를 위한 방안의 마련이 중요하다. 민관협의회는 입지 선정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의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설치되는 필수적 협의 체계이다. 해상풍력법에 따라 지자체장은 어업인단체, 주민대표, 관계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민관협의회 구성과 운영 방식에 대한 규정은 법 제17조에 규정되어 있고,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다.

입지 선정 필수 절차

해상풍력법에 따른 입지 선정 과정에서 민관협의회는 정부의 계획과 지역사회의 수용성을 연결하는 사회적 합의의 핵심 관문 역할을 한다. 중앙 정부 단위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가 해상풍력입지정보를 바탕으로 예비지구를 지정하고 이에 대한 기본설계안을 마련하면, 지방 정부 단위에서 주요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민관협의회를 통해 기본설계안에 대한 협의를 거쳐 해상풍력발전위원회가 최종 입지를 발전지구로 지정한다. 이후 선정된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민관협의회 협의 결과의 이행 사항을 실시계획에 포함해야 중앙 정부 승인을 받을 수 있다.

2.2 현행 조례 및 지침의 한계

민관협의회 조례의 한계

해상풍력법 제정 이전부터, 일부 지자체는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해 왔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조례를 통해 지역의 특성과 이해관계자들의 구체적인 우려를 반영하여 해상풍력 민관협회의 목적, 구성, 운영 방식을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조례에 따른 민관협의회 구성의 대표성과 균형성은 지역별로 편차가 크고, 지자체별로 다양한 특징을 보인다. 몇몇 지역에서 나타난 위원 대표성 논란이나 내부 갈등은 협의체 구성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어떤 지역에서는 민간 위원 구성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협의회 참여가 보류되었고, 일부 어업인 위원들은 비어업인 참여는 대표성이 없다고 비판하면서 시민단체 인사의 민간 위원 선임에 반발하여 회의 불참을 선언하기도 했다. 또한 다수의 조례가 회의 공개 원칙, 실무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 설치, 갈등 조정 기능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운영의 투명성과 결과의 이행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간사를 관련 부서 팀장이 담당하도록 규정한 조례도 많으나, 이는 협의회와 안정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처럼 지자체 조례는 협의 구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는 의의가 있으나, 법적 강제력과 통일된 기준의

부재로 인해 지역 간 격차와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지 못했다.

집적화단지 지침의 한계

조례가 지자체 단위의 자율적 대응이었다면,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해상풍력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다. 정부는 2020년 11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이하 ‘집적화단지 지침’)'을 제정했다. 집적화단지란 지자체가 직접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수용성과 환경성을 사전에 확보한 뒤 산업부에 지정을 신청하며, 지정 이후 사업시행자를 공모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개별 사업자가 입지를 먼저 선점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지자체가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입지 선정에 선행시킨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전환이었다. 이어 2021년 8월 마련된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가이드라인’은 공모를 통한 지자체 주도 해상풍력 사업 추진시 민관협의회 운영을 의무화하고, 사업 평가에 주민 수용성 배점을 높게 책정했다. 이는 갈등 조정을 사업 성공의 핵심 요소로 제도화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집적화단지 지침은 민관협의회 구성과 운영의 틀을 제공하면서도 핵심적인 한계를 남겼다. 지침에 따르면 협의회는 정부위원, 민간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되며, 민간위원과 공익위원 수의 합이 과반수를 차지해야 하고, 지자체는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하여 민간위원을 구성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지침과 가이드라인은 형식적 구성 기준은 마련하지만, 지역 공동체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와 유기적인 소통 절차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 때문에 지자체에서 실제로 균형 잡힌 위원 구성과 체계적인 협의회 운영을 실현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2.3 하위 법령에서 구체화해야 할 사항

2.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례와 집적화단지 지침은 민관협의회 필요성을 인식하고 제도화를 시도했으나 법적 강제력과 구체적 기준의 부재라는 한계를 넘지 못했다. 해상풍력법은 이 공백을 메우는 상위 법률로서 의미를 갖지만, 협의회와 실질적 설계는 대부분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다. 따라서 시행령이 어떤 내용을 담느냐에 따라 민관협회의 실효성이 결정된다. 이 절에서는

시행령에서 반드시 구체화해야 할 두 가지 핵심 사항을 짚는다.

민관협의회 구성 방안

민관협의회 구성 시 대표성의 문제는 갈등의 출발점이 되어 왔다. 단순히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을 포함하는 것을 넘어, 각 그룹 내의 다양한 목소리(예: 어업 방식별 어민,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를 포괄하고, 이들의 대표성을 둘러싼 내부 갈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민관협의회를 사업 구상 초기부터 구성하여,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이해관계자가 미리 참여할 통로를 여는 것이 중요하다. 조례에 따르면 민관협의회는 대체로 부단체장이 위원장을 맡고 공무원, 어업인, 주민, 전문가,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나, 구성의 대표성과 균형성은 지역별로 편차가 크다. 해상풍력법에 따른 민관협의회에서는 이러한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이해관계자 유형을 구분하고, 각 부문별 위원의 추천과 위촉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민관협의회 운영 방안

구성만큼 중요한 것이 운영의 지속성과 투명성이다. 시행령에는 회의록·심의 결과·합의안의 공개 의무, 협의 결과의 행정 반영 절차를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 운영의 지속성 확보 측면에서도 개선이 요구된다. 해상풍력법에서는 간사 역할을 행정지원 전담기구(또는 사무국)로 제도화하여 협의회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현행 조례상 임기는 통상 2년(1회 연임 가능)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해상풍력사업의 중·장기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 단계와 연동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는 일정 요건 하에 연임을 허용함으로써 협의체 운영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그리고 단순한 의견 청취를 넘어 이해관계자의 역량을 강화하여 건설적 논의를 유도할 수 있는 참여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갈등 당사자 간의 불신이 깊을 때 중립적인 제3자의 조정 및 중재 절차가 필요하다.

3 국내외 사례 분석 및 설계 원칙 도출



3.1 국내 해상풍력 갈등의 구조적 요인 분석

국내 해상풍력 사업에서 이해관계자 갈등이 반복되는 것은 개별 사업의 관리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지역마다 사업 규모나 이해관계자 구성이 다름에도 갈등의 양상이 유사하게 반복된다는 점은, 제도 설계 차원의 구조적 요인이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국내 갈등 사례(사례 연구 보고서 참조)를 분석하면 네 가지 구조적 요인이 반복적으로 확인된다.

절차적 정당성의 결여

갈등의 가장 근본적인 기제는 사업자가 입지를 일방적으로 선정한 뒤 사후에 주민설명회를 여는 방식에 있다. 이해관계자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려진 결정을 통보받는 위치에 놓인다. 이러한 설명회는 실질적인 협의라기보다 절차 이행에 그치며, 이해관계자들에게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은 부여되지 않는다. 이러한 초기 단계의 절차적 불공정성은 상생협약 체결, 보상안 협의, 민관협의회 운영 등 향후 진행되는 모든 후속 공정의 신뢰도를 지속적으로 훼손해 왔다. 협의회가 의사결정의 전제조건이 아닌 사후 절차로 운용될 경우,

이해관계자의 실질적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

정보 비대칭성과 대표성 왜곡

사업 관련 주요 정보가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체계적으로 공유되지 않고 특정 단체에 편중되거나 비공식적인 경로로 유통되면서 제도적 차원의 정보 비대칭성이 심화되었다. 특히 행정기관이 협의 대상을 자의적으로 선정하거나 특정 인물에게 협상 전권을 부여하는 경우, "지역의 진정한 대표성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둘러싼 내부 갈등이 발생하였다. 이는 민관협의회 구성이나 상생협약 체결 이후에도 합의의 정당성이 부인되거나 파기되는 사례로 이어졌다. 정보 접근의 불균형과 대표 선정의 불투명성은 협의 결과의 수용성을 낮추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생계 기반 침해 및 보상 체계의 한계

조업구역의 축소와 어장 훼손, 항로 제한 등은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생존권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사회영향평가와 보상 체계에 대한 법적 규정이 미비하여 상당 부분 행정지침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금전적 보상 중심의 협상 구조에서는 지역 공동체 차원의 장기적 생계 안정이나 해양 생태계 복원과 같은 가치가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하며, 특정 집단에 집중된 보상이 어민 내부의 분열을 야기하는 사례도 확인되었다. 단기·금전 보상 위주의 체계로는 지역 공동체 전반의 수용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

협의회 운영의 형식화

민관협의회가 구성되더라도 실질적인 권한이 부재하거나 지자체 및 사업자가 운영을 주도할 경우, 이해관계자들이 협의 과정을 형식적 절차로 인식하게 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민관협의회를 통한 갈등 조정 노력과 군민펀드, 주민참여형 이익 공유 모델 등 대안적 시도가 나타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들이 법적 구속력과 연계되지 못한다면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협의회 권한 범위와 결과의 행정적 구속력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는 한, 협의회가 실질적 거버넌스 기구가 아니라 형식적 절차로 운영될 위험은 남는다.

3.2 해외 이해관계자 협의 모델의 시사점

해외 사례는 해상풍력과 어업 간의 갈등을 단순한 민원 해결 차원이 아닌, 체계적인 거버넌스 시스템을 통해 관리해 온 경험을 보여준다. 이 절에서는 사례 연구 보고서에서 분석한 해외 협의 모델(사례 연구 보고서의 2장 참조)을 3.1에서 확인된 국내 갈등의 구조적 요인과 연결하여, 한국 민관협의회 설계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네 가지로 정리한다.

법적 근거 마련과 절차적 엄밀성 확보

해외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첫 번째 특징은 협의 절차가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점이다. 일본의 경우 ‘협의-지정-공모’로 이어지는 절차적 순서를 법령으로 규정하고 선형적 순서를 엄격히 준수하여, 협의회의 합의 없이는 구역 지정이 불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영국의 SOCC(Statement of Community Consultation) 제도는 사업자가 누구와 어떤 내용을 논의했는지를 법정 문서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절차적 투명성을 강제한다. 이는 3.1에서 확인된 ‘선결정·후통보’ 방식의 절차적 정당성 결여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제도적 응답으로, 협의를 의사결정의 전제조건으로 위치시킨다는 점에서 한국의 시행령 설계에 중요한 참고점이 된다.

다층적 거버넌스 구조와 대표성의 체계화

해외 사례는 이해관계자의 다양성과 갈등의 중층적 구조를 반영하여 협의의 층위와 범위를 세분화하는 거버넌스 설계를 채택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협의실무그룹과 양측 연락관 구조를 통해 중앙과 지역, 현장의 역할을 분리하고, 각 층위에서 적합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설계하였다. 협의의 주체는 개별 어민의 의견보다, 수협이나 어촌계와 같은 공식적인 어업 조직의 대표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함으로써 협의의 정당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전문가 실무그룹과 지역사회 기반의 현장 지식이 상호 보완하는 통합적 거버넌스 모델이 국내 여건에 더 효과적인 구조가 될 수 있다. 이는 3.1에서 확인된 대표성 왜곡과 정보 비대칭 문제를 동시에 다루는 설계 방식으로, 단일 협의 채널보다 기능별로 분화된 다층 구조가 실효적임을 시사한다.

정보 투명성 강화 및 디지털 인프라 구축

해외 사례에서 정보 공개는 일회성 설명회가 아닌 사업 전 과정에 걸친 상설 공개 체계로 운영된다. 영국의 KIS-ORCA와 Kingfisher Bulletin, The Crown Estate의 Marine Data Exchange 등은 어업인이 실시간으로 해상풍력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 인프라를 운영한다. 이러한 상시적이고 투명한 정보 공유 시스템은 이해관계자 간의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인 협의 환경을 조성하는 토대가 된다. 이는 정보 비대칭에 따른 협의 신뢰도 저하 문제에 대한 실질적 대응책으로 볼 수 있다.

실행력 담보를 위한 평가 및 모니터링 연계

해외 사례는 협의의 결과가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사업의 전 단계에서 이행되기 위해 사업자 평가 및 사후 관리 시스템과 연계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일본의 사례에서는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 평가 항목에 지역 공존 계획과 협의의 품질을 포함함으로써, 사업자가 자발적이고 성실하게 협의에 임할 유인을 경쟁 구조 안에 내장하였다. 영국은 협의 결과를 피해 완화 대책 및 장기 모니터링 조치로 구체화하여 운영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즉, 협의 모델의 지속가능성은 법적 강제력, 정보 공개, 상시 소통과 모니터링이 하나의 유기적 체계로 함께 작동할 때에만 담보된다.

3.3 민관협의회 제도 설계의 기본 원칙

3.1에서 진단한 국내 갈등의 구조적 요인과 3.2에서 정리한 해외 협의 모델의 시사점을 종합하면, 국내 민관협회의 반복적 실패는 개별 운영상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 설계 차원의 공백에서 비롯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형 민관협의회 제도 설계가 따라야 할 여섯 가지 기본 원칙을 도출한다.

첫째, 협의는 의사결정에 선행해야 한다.

국내 갈등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출발점은 입지 결정 이후 이해관계자 설득이 시도된다는 점이다. 입지가 확정되고 투자가 이루어진 뒤 시작되는 협의는 형식적 절차로 전락한다. 해외 사례가 일관되게 보여주는 것은, 협의가 의사결정 이전에 배치될 때만 실질적 영향력을 갖는다는 점이다. 민관협의회는

기본설계 확정 이전에 구성되어야 하며, 협의 결과가 이후 행정 결정의 전제조건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필요하다.

둘째, 대표성은 설계되어야 한다.

갈등 사례에서 반복된 문제는 '지역 내 실질적 대표성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합의의 부재였다. 대표성은 자연스럽게 형성되지 않는다. 이해관계자 분석을 통해 영향권 내 집단을 식별하고, 조직 단위 대표를 통해 집단 의사를 수렴하며, 찬성·반대·중립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구성 절차 자체를 제도화해야 한다. 특정 집단의 배제나 편중은 협의 결과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협의 이후에도 파기의 원인이 된다.

셋째, 정보 접근의 대칭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정보 비대칭은 협의의 전제를 무너뜨린다. 회의 자료, 회의록, 기본설계안, 환경영향 데이터가 모든 참여자에게 동일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기술적 쟁점에 대해서는 독립적 전문가의 검증과 자문이 제공되어야 한다. 정보의 균등한 공개는 실질적 협의의 기초 조건이다.

넷째, 갈등은 제도 안에서 관리되어야 한다.

갈등은 해상풍력 사업의 본질적 속성이다. 해상풍력 사업에서 어업 공간과 에너지 공간의 중첩, 개발 이익과 생계 침해의 긴장은 협의만으로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가 제도 밖의 분쟁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최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명확한 절차가 있어야 한다. 협의회 내부 조정에서 시작하여, 상위 심의기구를 거쳐 법적 구속력 있는 재정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경로가 사전에 설계되어 있어야 한다.

다섯째, 금전적 보상이 아니라 상생의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국내 협의회가 보상 규모를 둘러싼 협상에 집중되는 경향은 금전 보상 외의 선택지를 제도적으로 구체화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다. 해외 사례에서 확인되는 발전량 연동 이익공유, 주민참여 투자, 지역발전 기금, 장기 모니터링과 적응적 관리 등의 방식은 피해 보상이 아닌 공동 수혜 구조를 만든다. 민관협의회는 보상 협의 기구가 아니라 지역과 사업이 함께 이익을 나누는 상생 모델을 설계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해야 한다.

여섯째, 개별 제도가 아니라 연결된 체계로 설계해야 한다.

협의회 운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협의 결과가 지구 지정에 반영되고, 지정 조건이 사업자 공모에 연결되며, 공모 조건이 공사·운영 단계의 이행 관리까지 이어지는 통합적 구조가 필요하다. 해외 사례에서 확인되는 제도적 실효성은 개별 제도의 우수성보다, 각 단계가 다음 단계의 전제조건이 되는 연결구조에서 비롯된다. 4장에서 제시하는 한국형 민관협의회 운영 체계는 이 통합성을 전제로 설계된다.



4 한국형 민관협의회 운영 체계 설계



이 장은 3장에서 도출한 여섯 가지 설계 원칙을 바탕으로 한국형 민관협회의 구체적인 운영 체계를 설계한다. 설치 시기와 절차, 위원 구성, 회의 운영, 갈등 관리, 이익공유의 다섯 영역을 순서대로 다루며, 각 영역의 설계는 시행령 조문화를 염두에 두고 구체성을 갖추도록 한다. 이 장에서 설계하는 각 항목의 구체적인 조문안은 부록 A에, 실무 운영 절차는 부록 B에 수록되어 있다. 독자는 본문에서 설계의 방향과 근거를 파악한 후, 필요에 따라 해당 부록을 참조할 수 있다.

4.1 설치 시기·절차 및 권한 범위

4.1.1 설치 시기

해상풍력법에 따른 민관협의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된 예비지구를 대상으로 기본설계안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한 시점을 기준으로 설치된다. 통보를 받은 지자체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어업인단체, 주민대표, 관계 전문가,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대표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한다. 이 협의회는 기본설계안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향후 발전지구의 지정·변경 및 해제, 주민 및 어업인이 참여하는 이익공유 사업의 구성, 수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협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예비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전지구로 최종 지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민관협회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4.1.2 설치 절차

국내 갈등관리 제도와 행정위원회 관련 법령, 집적화단지 지침의 운영 규정, 해상풍력법상 설치 기한은 모두 단계적 설치와 기한, 역할 분담을 전제한다. 이를 반영하여 민관협회의 설치는 준비-발족-운영-종료의 네 단계로 구분하여 설계한다. 준비 단계에서는 전문기관을 통한 이해관계자 조사, 기본설계안 통보, 운영규정 마련, 지역 조직과의 초기 협의회가 이루어진다. 발족 단계에서는 법정 기한 내 구성과 위원 위촉, 간사·사무국 및 분과위원회 체계를 갖춘다. 운영 단계에서는 본회의와 분과의 연계 구조, 회의 절차, 중앙부처·공공기관의 비의결 배석 기준을 정리하며, 종료 단계에서는 합의문 및 권고안 채택과 공개, 후속 협의 및 재협의 연계를 명확히 한다. 각 단계별 기한과 역할 분담을 시행령에 명시함으로써 설치 과정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확보한다.

4.1.3 권한 및 한계

민관협의회는 의제 심의, 자료 요구, 합의문·권고안 채택, 이행 점검, 갈등 조정 요청 등 실질적 영향력을 가진 협의·권고 기구로 설정된다. 인허가 및 보상의 최종 확정 권한은 기존 법령과 행정 절차에 귀속되며, 협의회는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합의와 권고를 생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권한 구조는 국내 행정위원회 및 해외 해상풍력 협의 사례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방식으로, 협의회 역할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의제 설정, 상생모델 설계, 조건 부여에 대한 권고 등 행사 가능한 영향력을 최대화하기 위한 설계다.

4.2 위원 구성의 대표성 확보 및 선정 절차

4.2는 민관협의회가 누구로, 어떤 규모·비율로, 어떤 기준에 따라 구성돼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국내 해상풍력 사례와 관련 지침·조례, 해외 협의회 구성 방식, 일반 행정위원회 법리를 종합해 구성 원칙, 선정 절차·기준, 역할, 임기·교체의 핵심 요소를 정리한다.

4.2.1 구성 원칙

이해관계자 범주

해상풍력은 주민, 어업인, 지자체, 정부, 사업자, 전문가,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가 다층적으로 얹혀 있어 특정 집단 중심 구성은 불신과 갈등을 키울 수 있다. 관련 법령과 지침의 취지도 직접 영향 집단, 제도 집행 주체, 독립적 검증·감시 주체, 시행 주체를 함께 고려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위원은 직접 영향 집단(주민 대표, 어민 대표), 제도 집행 주체(지자체 및 정부·공공기관 대표), 독립적 검증·감시 주체(전문가, 시민사회), 사업 시행 주체(필요 시 사업자)로 구분한다.

위원 정수

국내 유사 협의회는 통상 20명 내외, 복수 지자체 또는 복합 의제는 25~30명 내외가 일반적이다. 해상풍력 협의회는 입지, 환경, 어업, 상생, 계통, 보상 등 복합 의제를 포괄하므로 정수를 과도하게 축소하면 대표성과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생긴다. 따라서 단일 지자체는 20~25명, 복수 지자체 참여 시 25~30명을 권장한다.

위원 비중

민간위원 과반, 전문위원 20% 이상, 정부·사업자 비중의 적정 제한이 대표성과 전문성 확보의 최소 조건으로 확인된다. 정부 또는 사업자 주도 기구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민간위원 약 50%, 전문위원 약 25%, 정부위원 약 25%를 권장하며, 이는 수용성(민간), 독립·전문성(전문), 행정 책임성과 제도 연계(정부)를 균형 있게 담보하기 위한 설계다.

4.2.2 위원 선정 절차

위원 선정 방식은 협의회 신뢰도를 좌우하므로, 특정 단체 및 인맥 중심 추천이나 찬반 편향을 방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선정 절차를 조사, 명단, 검토,

위촉의 4단계로 정리한다.

이해관계자 조사 및 후보자 발굴

전문기관이 사회영향평가, 현장조사, 설문, FGI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를 식별하고 입장, 영향 범위, 대표성을 분석해 조사 단계부터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

후보자 명단 작성

범주별로 정수의 2~3배 후보군을 구성하고 유형, 입장, 추천 사유를 기록해 최종 구성 이후에도 선정 근거를 소급·검증할 수 있도록 한다.

지자체 검토 및 조정

지자체가 후보 명단을 검토하고 수협과 어촌계 등 지역 조직 의견을 반영해 조정하되, 변경 및 배제 사유를 문서화해 상위 기관에 통보하도록 해 자의적 개입을 억제하고 투명성을 확보한다.

최종 위촉 및 위원장 선임

최종 위촉권은 지자체장에게 부여해 협의 결과의 집행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한다. 위원장은 원칙적으로 지자체 정부위원 중에서 지정해 협의 결과가 인허가, 보상, 상생정책 등과 연계된 실행으로 이어지도록 하되, 공동위원장이나 전문위원 부위원장 등 보완 장치로 편향 우려를 완화한다.

4.2.3 위원 선정 기준

민간위원은 직접 영향 집단을 대표하므로 지역 대표성이 확인되는 공식 대표자를 포함해 집단 의견이 수렴 및 전달되도록 하고, 찬성·반대·중립을 균형 있게 포함해 조정 기능을 확보한다. 또한 공공성과 참여 의지, 다양성과 소통 역량을 함께 고려해 개인 민원화와 집단 간 단절을 예방한다. 전문위원은 정책·제도 개선과의 연계를 위한 핵심 축이므로 해양환경, 수산업, 재생에너지, 갈등관리, 법률·제도 분야의 전문성, 이해관계로부터의 상대적 독립성, 갈등 중재 역량, 관련 참여 경험을 기준으로 선발한다.

4.2.4 역할 구분

역할이 불명확하면 결정과 이행이 지연되고 부담과 권한이 특정인에게 집중될 수 있으므로 역할을 구분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의제 조정, 합의 도출, 표결 진행을 총괄해 절차 지연을 방지한다. 위원은 소속 집단 의견을 전달하되 전체 합의를 존중하는 공동 책임을 진다. 간사는 회의 준비, 안건 정리, 회의록 작성, 절차 관리를 담당하는 운영자이자 조정의 중간 축이다. 사무국은 회의 운영, 자료·기록 공개, 1차 갈등 조정, 이행 지원을 수행하는 상시 조직으로 협의회 지속성을 뒷받침한다. 분과위원회는 복잡 의제를 심층 검토해 본회의가 핵심 의사결정에 집중하도록 지원한다.

4.2.5 위원 임기 및 교체

해상풍력은 장기 사업이므로 협의회도 장기 운영을 전제로 하며, 장기 재직의 폐쇄성과 잦은 교체의 불안정성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 임기는 협의회 존속 기간과 연동된 2년으로 하고 연임·승계를 허용해 경험과 합의의 축적을 보장한다. 다만 교체는 명확한 사유와 엄격한 의결 절차를 요구하고 상위 행정기관 통보를 통해 자의적 교체를 방지한다.

4.3 회의 운영 방식: 의사결정 구조, 정보공개 및 의견수렴 절차

4.3은 민관협의회가 어떤 절차로 운영될 때 수용성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국내 해상풍력 갈등 사례와 일반 행정위원회 운영 기준, 주민참여 거버넌스 사례를 바탕으로 운영 개요, 의제 관리와 의사결정, 정보공개 및 의견수렴의 세 축으로 정리하였다.

4.3.1 운영 개요

회의 소집과 정족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일정 비율의 위원 또는 행정 책임자 요청에 따른 소집도 허용해 견제 기능을 확보한다. 개회는 재적위원 과반 출석, 의결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기준으로 하며, 회의 일시·장소·안건은 원칙적으로 7일 전 통보하되 긴급 시 단축하고 사유를 기록한다. 대리 참석은

허용하되 표결권은 제한해 형식 운영을 방지한다.

회의 종류 및 주기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이상 개최해 사업 전반을 점검하고, 긴급 이슈에는 수시회의로 대응한다. 복잡한 의제는 분과회의에서 심층 검토해 본회의가 핵심 합의에 집중하도록 한다.

회의 형태와 참석 범위

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비대면을 허용한다. 참석은 위촉 위원을 원칙으로 하면서, 필요 시 의결을 거쳐 참고인·전문가를 출석시켜 전문성을 보완한다. 갈등이 첨예한 사안은 퍼실리테이터 등 중립 지원 인력을 활용한다.

협의회 존속 기간

협의회는 기본설계 협의부터 사업자 선정 시점까지 이어지는 장기 거버넌스 기구로 설계한다. 기본설계안 협의결과 통보 기한은 6개월(필요 시 1회 연장)로 두고,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협의회는 사업자 선정 시점까지 존속하도록 한다.

예산 관리

운영 예산은 지자체 부담을 원칙으로 하여 공공성을 분명히 하고, 수당은 민간위원·전문위원에 한해 지급하되 공무원·사업자 위원은 직무 범위 내 활동으로 본다. 예산 집행 내역은 기록·보관해 검증과 신뢰 확보의 기반으로 삼는다.

4.3.2 의제 관리와 의사결정

의제 발굴과 사전 절차

위원 누구나 의제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간사 및 사무국이 이를 정리해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중요 안건은 분과회의 선검토와 7일 전 자료 제공을 원칙으로 하며, 기본설계안 검토와 함께 상생·이익공유, 수산업·해양환경 등 핵심 갈등 의제를 필수 안건으로 다룬다.

의제 조정과 상정

위원장은 필요성과 시급성을 기준으로 상정 여부를 판단해 안건 남발을 통제하되, 우선순위는 위원 간 합의로 정한다. 갈등 가능성이 큰 사안을 우선 논의해 선제적 조정을 유도한다.

의사결정 원칙

합의 우선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어렵거나 중대한 안건은 표결로 결정한다. 표결은 재적위원 과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기준으로 하며, 사업 변경·상생방안 확정·분쟁 조정 등은 표결을 의무화해 정당성과 책임성을 확보한다.

4.3.3 정보공개 및 의견수렴

회의록 작성·관리

회의록은 주요 발언과 합의 및 의결 사항까지 포함해 작성하고, 일정 기한 내 배포 및 확정한다. 합의문 등 부속 자료도 함께 관리하며 주민 열람을 허용한다.

정보 공개와 비공개 예외

최종 회의록과 안건 자료는 공식 창구를 통해 공개하되, 개인정보·영업비밀 등은 법령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으며 사유를 명시한다. 익명 처리와 비밀유지 규정은 안전한 발언 환경을 위한 장치로 둔다.

주민 의견수렴과 피드백

민간위원이 소속 공동체에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도록 하며, 공청회·설명회·간담회·온라인 창구 등으로 의견 접수 경로를 마련한다. 의견은 취합·보고해 필요 시 의제로 상정하고, 반영 여부와 사유를 공개해 불신을 줄이고 참여를 유지한다.

4.4 갈등 관리를 위한 단계별 조정 체계

4.4는 해상풍력 민관협의회가 어떤 갈등을 전제로 설계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갈등 발생 시 이를 어떤 절차와 체계로 다룰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정리한다.

국내외 해상풍력 및 공공갈등 사례와 관련

법·제도(어업·재산권·정보공개·공공갈등 관리 제도 등)를 종합하면, 갈등 관리는

갈등 유형의 사전 인식과 구조화, 단계별 해결 프로세스, 일상 민원의 제도 내 흡수 체계라는 세 축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4.4.1 주요 갈등 유형

국내 해상풍력 추진 과정에서 반복된 분쟁은 성격에 따라 네 가지 범주로 수렴한다. 유형을 사전에 인식하고 구조화하는 것은, 갈등 발생 시 적절한 해결 경로를 선택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사업 영향 관련 갈등

단지 구성에 따른 어업 공간 제약, 수산자원 변화에 대한 불안, 송전선로·변전소로 인한 생활권과 재산권 침해 우려, 해양환경 및 경관 훼손 논란 등으로 나타난다. 이는 어업 활동 보장 원칙, 재산권 보장, 발전시설 주변지역 지원제도 등과 직접 연결되므로 협의회가 반드시 다뤄야 하는 핵심 축이다.

절차와 참여 관련 갈등

위원 구성의 공정성과 대표성 논란, 특정 단체의 배제, 행정·사업자와 주민 간 정보 비대칭, 설명회와 허가 절차의 불투명성 등에서 발생해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해 왔다. 이러한 갈등은 단순한 감정적 반발이 아니라 제도 설계의 미비에서 구조적으로 발생하며, 위원 구성·회의 공개·자료 제공 기준의 명확한 규정을 통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상생·보상 관련 갈등

어업 보상 범위, 보상 단가와 산정 방식, 주민참여사업의 대상·규모·방식, 지역발전 및 일자리 효과의 현실성에 대한 이견이 누적되면서 사업 지연과 중단으로 이어진 사례가 반복되었다. 상생과 보상 원칙 및 절차를 협의회 초기 의제로 공식화함으로써 이견의 조기 조정이 가능하다.

협의회 운영상 갈등

안건 우선순위와 논의 방식에 대한 이견, 표결 기준과 조정 메커니즘 부재로 인한 장기 교착, 절차 위반에 따른 불신과 이탈 등으로 나타난다. 정족수, 표결 기준, 회의 절차 등 운영의 최소 기준을 시행령에 명시함으로써 이 유형의 갈등을 제도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4.4.2 갈등 해결 프로세스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단계적으로 처리하는 구조가 사업 지속 가능성을 좌우한다는 점은 국내외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공공기관 갈등관리 제도, 행정심판·재정 절차, 해상풍력 관련 상위 위원회 제도를 종합하면 3단계 조정 구조가 현실적이다.

첫 단계는 협의회 내부 조정이다. 갈등은 원칙적으로 민관협의회에서 토론과 조정을 통해 해결하며, 위원장은 의제를 분리해 심층 논의를 진행하거나 중립적 진행자를 지정해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한다. 민간위원은 소속 공동체의 입장을 전달하는 동시에 절충점을 찾는 역할을 병행하도록 하여 협의회가 1차 해결의 장으로 기능하도록 한다.

둘째 단계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등 상위 심의기구 연계다. 협의회에서 해결되지 않는 사안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등 상위 심의기구로 회부해 분쟁 당사자, 원인, 영향에 대한 전문 분석을 거치고 조정안을 도출하는 2차 조정을 시도한다.

셋째 단계는 발전위원회 재정 절차로의 이관이다. 최종적으로 해소되지 않는 갈등은 재정 신청과 당사자 통지, 의견 진술, 재정과 재정서 송달 절차를 거쳐 행정심판, 소송 등 일반 행정 구제 절차와 연계되도록 한다. 재정 결정에 대해 60일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않을 경우 당사자 간 합의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도록 규정함으로써 분쟁 해결의 확실성을 담보한다.

4.4.3 민원 처리 체계

국내외 사례에서 개별 민원이 제때 처리되지 못하면 언론, 정치, 법적 분쟁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민원을 단순 불만이 아니라 갈등의 조기 신호이자 운영 개선을 위한 피드백으로 보고, 민원을 제도 안으로 흡수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민원은 서면, 온라인, 현장 방문 등 다양한 경로로 공식 접수하고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절차를 안내해 접근성을 확보한다. 사무국은 접수 일자와

내용을 기록한 뒤 단순 질의나 정보 요구는 신속히 답변하고, 갈등 성격의 민원은 협의회 또는 실무위원회에서 검토 및 분석하여 필요 시 정식 의제로 상정한다.

협의회와 실무 단계에서 해결되지 않는 민원은 발전위원회 재정 절차 등 상위 조정 구조와 연계해 제도적 해결 경로를 갖추도록 한다. 또한 접수 후 일정 기간 내 1차 회신과 처리 결과의 문서 통지, 주요 민원 요약 공개를 통해 신속한 처리와 회신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4.5 이익공유 방안: 보상 중심에서 상생 모델로의 전환

이 절은 민관협의회가 지역·주민·사업이 함께 얻는 결과물을 어떻게 설계하고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다룬다. 국내외 해상풍력 및 재생에너지 수용성 연구와 상생·이익공유 관련 법·지침을 종합하면, 상생은 보상, 주민참여·이익공유, 지원사업의 세 축으로 정리되며, 도출 절차부터 의견수렴, 실행과 성과 관리까지 일관된 체계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4.5.1 상생방안 개요

해외에서는 여건과 제도 수준에 따라 상생 방식이 달라진다. 원해 중심 국가는 생활권 갈등이 상대적으로 작아도 어업 공간 갈등을 협의·조정 절차로 관리하고, 연안·근해 중심 국가는 조망권·소음·어업권 갈등에 대응해 보상과 참여 체계를 조기에 제도화해 왔다. 일부 국가는 특별법으로 상생·주민참여 계획 제출을 의무화해 상생을 절차의 일부로 위치시킨다.

국내의 경우 사회적 신뢰와 수용성이 낮고 보상 요구가 강한 구조가 있어, 단기적으로 보상·지원의 실효성도 함께 확보하면서 장기적으로 참여형 상생으로 전환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상생은 보상(어업·토지·생활권 보전), 주민참여·이익공유(참여사업, 지분·기금 등), 지원사업(생활·복지·환경 등 지원)의 세 축으로 정의하며, 보상 중심에서 보상 및 참여 병행을 거쳐 참여 및 공동 활동 중심으로 단계적 이행 로드맵을 갖추는 것을 전제로 한다.

4.5.2 상생방안 도출 절차

상생방안은 단계별 절차를 충분히 거쳐야 정당성과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다. 국내 해상풍력 협의회 및 연구사업 경험을 종합하면, 상생방안 도출은 조사, 분석, 숙의에 기반한 5단계 구조로 정리된다.

1. 기초조사 및 수요조사

주민 인터뷰·설문·현지조사 등을 통해 지역 인구·산업·생활여건·어업 의존도·공동체 구조를 파악하고, 상생에 대한 구체적 요구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단순 보상을 넘어 지역에 필요한 발전 방향을 확인한다.

2. 지역력 분석

인구, 경제, 교육, 복지, 안전, 환경 등의 지표를 정량 분석해 지역의 강점·취약점·발전 잠재력을 진단하고, 집중 투자 영역과 기대 파급효과를 판단할 근거를 마련한다.

3. 상생방안 후보 도출

조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증대, 복지, 교육, 인프라, 환경, 공동체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예비안을 폭넓게 발굴한다. 후보군을 충분히 확보해야 비교·조합·선택이 가능해져 논의가 민원 수준을 넘어 정책 대안으로 발전한다.

4. 최종안 확정

실행 가능성(법·제도·예산), 자원 조달 구조, 파급효과, 형평성 등을 기준으로 예비안을 평가·조정하고, 협의회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합의·확정한다.

5. 세부 실행계획 수립

확정된 방안을 예산, 일정, 담당 주체, 성과지표까지 포함한 실행계획으로 구체화해 합의문에 그치지 않도록 한다.

4.5.3 상생방안 의견수렴 절차

상생방안은 협의회 내부 합의만으로는 지역사회 전반의 수용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숙의 및 검증이 필요하다. 협의회는 후보안의 실행 가능성, 자원,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심층 논의하고 필요 시 외부 자문으로 전문성을 보완한다. 동시에 설명회·공청회·간담회·설문 등 복수 채널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며, 과정과 결과를 문서화·공개해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후 수렴된 의견을 종합해 안건을 조정하고 강화된 의결 기준을 적용해 대표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며, 최종안과 의사결정 과정을 공개해 이행·평가 단계의 점검 기반을 마련한다.

4.5.4 상생방안 실행 및 성과관리

상생은 전담 조직, 정기 점검, 성과지표 기반 평가, 피드백이 결합될 때 신뢰를 얻는다. 확정된 방안은 예산·일정·책임 주체·절차와 자원 확보를 명문화하고, 지자체·주민대표·사업자가 참여하는 운영체제로 상시 관리한다. 점검 결과는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기금 규모, 일자리, 만족도, 갈등 감소, 환경 개선 등 지표로 효과를 측정한다. 또한 정기 평가와 필요 시 제3자 평가를 통해 결과를 공개하고 다음 단계 상생방안에 반영하는 환류 체계를 갖춘다.



5 하위법령 정비 방안



4장에서 설계한 민관협의회 운영 체계는 해상풍력법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인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이 절에서는 4장의 분석을 바탕으로 시행령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다섯 가지 영역으로 요약한다. 각 영역에 대응하는 상세 조문안은 가이드라인 개발과 향후 개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부록 A에 수록하였다. 이 권고는 시행령 준비 과정에서 정책결정권자에게 제시되었으며, 입법예고 기간(2025년 12월 9일부터 2026년 1월 19일까지)에는 공식 서면으로 다시 제출되었다. 시행령(대통령령 제36216호)과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2호)은 2026년 3월 제정되어 법률과 함께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되었다. 제정된 하위법령과 이 보고서의 권고를 전면 비교한 내용은 부록 C에 제시하였다.

5.1 민관협의회 분쟁조정 방안

발전위원회의 재정 기능 신설

발전위원회에 재정 기능을 부여하고 “재정신청 접수 → 당사자 통지 → 의견진술(서면·대면) → 실무위원회 분석·조정 → 발전위원회 재정 → 재정서

송달 → 60일 불복기간 절차”를 표준화한다. 시행령 별표 또는 시행규칙에 재정신청 대상 분쟁 유형의 예시를 열거할 수 있다.

재정기능의 지원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른 주무부처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지원을 활용하면 중복 행정을 방지하고 기존 갈등영향분석 결과를 활용하도록 하여 효율성을 확보한다.

5.2 기본설계안 공개 및 의견수렴 절차

기본설계안 내용과 전문기관의 지정

이해관계자 수용성 확보계획에는 지역상생 및 이익공유 방안, 커뮤니케이션 전략, 갈등조정 매뉴얼을 포함하도록 한다. 한편, 제3의 전문기관을 지정해 이해관계자 수용성확보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조사와 민관협의회 위원 후보자 목록, 민관협의회 운영계획 마련을 담당하도록 한다.

기본설계안의 의견수렴 절차 구체화

관할 지자체의 장은 기본설계안을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 일간지와 웹사이트에 공개하여 주민이 20일 이상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에 대한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한다. 공람 중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웹사이트에 14일 이상 게시한다.

의견수렴 절차의 생략

지역 주민의 방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온라인 설명회·공청회를 진행하거나 자료를 공개하고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받아야 한다.

5.3 민관협회의의 구성

위원의 정수 범위 설정

민관협회의의 위원은 위원장 포함 20~25인, 복수의 지자체가 포함된 경우 25~30인 범위에서 관할 지자체장이 지정하되, 위원의 구성비율은 정부위원

25%, 전문위원 25%, 민간위원 50% 수준으로 정한다.

위원의 위촉방식

협의회 위원 위촉은 제3의 전문기관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이해관계자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후보자군을 추천하고, 지자체장은 후보군 중 위원 정수에 맞게 위원을 위촉한다. 전문위원에는 갈등관리 전문가, 환경시민단체, 해상풍력 관계 전문가를 포함하고, 정부위원은 지자체에서 사업 인허가, 협의, 보상, 주민 소통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 또는 과장으로 한다. 민간위원은 전문기관이 제공한 목록을 바탕으로 찬반 비율, 이해관계자 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5.4 민관협회의의 운영

위원장

위원장은 위촉된 지자체장 정부위원 중 1명으로 지명하고, 지명된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필요한 경우 안건을 표결에 부칠 수 있다. 협이가 교착상태에 빠진 안건이나 발전위원회에 재정요청, 협의 결과의 승인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표결에 부의할 수 있다.

중앙부처 공무원의 배석

민관협의회나 발전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 기후부나 해수부의 공무원이 민관협의 과정에 배석할 수 있으나, 발언권을 갖고 표결권은 갖지 않는다. 민관협회의의 배석 요청이 있는 경우 발전위원회에 사유를 담아 제출하고, 발전위원회는 해당 사유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정하여 협의회에 배석하도록 한다.

5.5 협의 결과의 공개 및 의견 수렴

민관협의회 결과의 공개

협의 완료 이후 일간지와 지자체 웹사이트에 협의 결과를 7일 이내 공개하고, 14일 이내 협의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설명회 또는 공청회의 개최

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이해관계자가 30명 이상인 경우 협의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이를 진행해야 한다. 단, 지역주민 방해 등의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6 결론 및 정책 제언



해상풍력법 시행에 따라 향후 추진되는 정부 주도 해상풍력 사업은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민관협의회를 운영해야 한다. 공정하고 안정적인 민관협의회를 위해서는 해상풍력법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에 다음과 같은 방향의 정책 개선 사항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첫째, ‘사전 조사’에 기반한 공정하고 실효적인 협의회 설계를 의무화해야 한다.

현행 다수 지자체 조례는 협의회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없이 지자체장의 권한에 의존하고 있어, 초기 구성 단계부터 편향성 및 대표성 논란이 반복되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하위법령(시행령)에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한 사전 이해관계자 분석 절차를 명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인허가 과정의 후행 갈등을 예방하고 행정·재정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1. 전문기관의 독립적 역할 법제화: 하위법령에 주무부처(또는 관할 지자체)가 기본설계안 통보 전후로 중립적 전문기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이 기관은 지자체나 사업자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다음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이해관계자 식별 및 분석: 현장 조사를 통해 직접/간접 이해관계자를 과학적으로 식별하고(어업 종류, 지역, 단체 등) 인터뷰(FGI)를 진행한다.
 - 사회영향평가(SIA) 및 갈등영향분석: 예상되는 갈등 쟁점을 사전에 도출하고, 잠재적 갈등 요인을 분석하여 협의회 기초 자료로 제공해야 한다.
2. 후보자 명부 작성 및 추천: 전문기관은 객관적인 조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대표성, 균형성, 공공성 원칙에 입각한 ‘민관협의회 위촉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할 지자체에 공식 제출해야 한다.
 3. 지자체의 최종 위촉 및 책임: 지자체장은 이 전문기관의 후보자 명부를 바탕으로, 지역 수협·어촌계 등 공식 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위원을 위촉한다. 이 방식은 국내 사례에서 검증되었듯이, 특정 이해단체가 위원 구성을 독점하거나 핵심 이해당사자가 배제되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협의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는 가장 효과적인 장치다.

둘째, 전문성과 독립성,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상설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민관협의회가 복잡한 쟁점을 다루고 장기간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체계가 필수적이다.

1. 간사 및 사무국 운영: 이해관계자 간의 상시 소통 창구를 확보하고 협의회 운영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간사와 사무국이 필요하다. 간사는 행정 연계를 담당하고, 사무국은 회의 준비, 기록 관리, 정보공개, 1차 민원 처리 등 실무 전반을 전담하여 협의회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해야 한다.
2. 과학적 검증 및 상시 소통 전문기구 도입: 영국의 어업연락관(CFLO) 제도가 보여주듯, 개발사와 어업인 사이의 신뢰할 수 있는 상시 소통 창구(사례 연구 보고서 2.1 참고)는 과학적 검증과 지속적 소통을 함께 뒷받침한다. 국내 실정에 맞게 이 역할을 담당할 전문기구의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 또한 국내 집적화단지 지침 사례처럼 어업, 환경, 상생 등 주제별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논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3. 국가 단위 성과관리체계로의 발전: 장기적으로는 개별 협의회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환류하는 국가 단위의 관리체계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우수 사례를 확산하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해상풍력 거버넌스 전반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셋째, 수용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대표성 있는 위원 구성’을 법제화해야 한다.

협의회의 대표성은 논의의 질과 결과의 수용성을 결정한다.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위원 구성이 편차가 크고, 정부·사업자 중심의 구성은 주민 불신을 초래한다. 따라서 하위법령에 위원 정수와 구성 비율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1. 위원 정수 및 구성 비율 명시:

- **위원 정수:** 위원장 포함 20~25인을 기본으로 하되, 복수 지자체(송전선로 경과지 포함)가 연관될 경우 25~30인 범위로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 이는 효율성과 대표성을 동시에 고려한 규모다.
- **구성 비율:** 가장 중요한 것은 구성 비율이다. 주민 수용성 확보라는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 민간위원(주민·어업인 대표) 비중을 50% 내외로 보장해야 한다. 나머지 50%는 정부위원(지자체, 관계 공공기관) 25%와 전문위원(갈등관리, 해양환경, 에너지, 법률 전문가 등) 25% 수준으로 규정하여 실행력과 전문성을 담보해야 한다.

2. 위원장 및 위원 선정 기준 구체화:

- **위원장:** 협의 결과의 행정적 이행력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위원장은 관할 지자체장이 지명하는 1인의 정부위원(부단체장 급)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다수 지자체 조례에서도 확인되는 방식이다. 다만, 복수 지자체가 얹힌 복잡한 사안의 경우, 중립성 확보를 위해 전문위원 1인을 포함한 공동위원장 체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두어야 한다.

- 민간위원: 어촌계장, 수협 임원 등 공식 대표 지위를 가진 인물을 포함하여 집단적 의사를 대변해야 하며, 찬·반·중립 등 다양한 입장이 편중되지 않고 균형 있게 포함되어야 한다. 사례 연구 보고서 3.1의 사례 B에서 확인되듯, 찬성·반대·중립 입장의 대표를 의도적으로 협의회에 포함하는 것이 협의회 안정성에 기여한다.

넷째,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의 운영’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

이해관계자의 신뢰는 투명한 정보 공개에서 나온다. 동시에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효율적인 운영 절차도 필수적이다.

1. 정보공개 의무화 및 접근성 강화:

- 하위법령은 최종 회의록 및 주요 안건 설명 자료를 지자체 홈페이지와 협의회 전용 정보공개 창구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이는 국내 사례에서 나타난 정보 비대칭과 불투명성 문제를 해소하는 핵심 장치다.
- 다만, 자유로운 토론을 보장하기 위해 발언자가 요청할 경우 회의록에 익명 기재를 허용하는 보완 장치도 필요하다.

2. 신속하고 예측 가능한 운영 시한 설정:

- 불필요한 논의 장기화는 갈등을 키우고 사업 불확실성을 높인다. 하위법령은 명확한 시한을 설정해야 한다.
- (구성 시한) 지자체장은 기본설계안 통보 후 3개월 이내에 협의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 (협의 기간) 기본설계안에 대한 협의 기간은 기본 6개월로 설정하고, 필요한 경우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6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

3. 효율적 의사결정 구조 마련:

- 의사결정은 만장일치 합의를 우선하되, 교착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

표결 장치를 두어야 한다.

- 특히, 상생방안 확정, 사업계획 중대 변경 등 핵심 사안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강화된 의결 정족수를 적용해야 한다. 이는 다수 지침과 실제 운영 사례에서 검증된 방식이다.

다섯째, 교착상태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3단계 갈등 관리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갈등은 필연적이다. 중요한 것은 이를 해결하는 명확한 절차를 법제화하는 것이다. 민관협의회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장기 표류할 경우를 대비한 강력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1. 1단계(민관협의회 내부 자율 조정): 갈등은 우선적으로 협의회 내부의 자율적 토론과 조정을 통해 해결을 시도한다.
2. 2단계(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조정 요청): 내부 해결이 불가능한 사안은, 협의회 의결 또는 지자체장의 요청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
3. 3단계(발전위원회의 강력한 재정 기능 신설): 이것이 핵심 권고 사항이다. 현행법상 조정은 권고 사항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다.
 - 전기사업법 제57조의 전기위원회 재정 기능을 모델로 한 재정 기능을 발전위원회에 신설해야 한다. 다만 합의 간주 효력은 명시적인 법률상 근거를 요하므로 이는 법률 개정 사항으로 제안하며, 그때까지는 시행령이 법 제17조 제6항의 조정 기능에 절차적 형식을 부여하도록 한다. 재정 절차는 당사자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하고, 재정 과정에서 주무부처 산하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전문적 지원을 받아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
 - 재정이 이루어지면, 당사자는 60일 이내에 불복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나면 재정 내용은 당사자 간 합의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도록 규정해야 한다. 이 3단계 절차는 해결 불가능한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종결시켜 갈등의 장기화를 막는 가장 실효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여섯째, 보상을 넘어 이익 공유 중심의 실질적 상생방안을 제도화해야 한다.

국내 갈등의 상당 부분은 사후적·금전적 피해 보상 논의에 매몰되어 발생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선제적 이익 공유로 관점을 전환해야 한다.

1. 상생방안 논의의 의무화: 단순한 어업 피해 보상을 넘어,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지역상생기금, 사회적 투자펀드 등 선제적 이익공유 메커니즘 설계를 민관협의회 핵심 법정 의제로 다루도록 명시해야 한다.
2. 체계적 상생방안 도출 프로세스 도입: 상생방안은 일회적 제안이 아닌, 체계적 절차를 통해 도출되어야 한다. 지역 B 사례에서 검증된 바와 같이, 1) 기초조사 및 수요 파악 → 2) 지역력 분석 → 3) 이해관계자 의견수렴(FGI) → 4) 상생방안 후보 도출 → 5) 최종안 합의의 절차를 표준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3. 지속가능한 이행 거버넌스 구축: 합의된 상생방안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독립적인 재단이나 기금 운영위원회 등 지속가능한 추진 조직(거버넌스)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정기적인 이행 점검과 성과평가, 피드백 절차를 마련하여 상생방안이 일회성 약속에 그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상의 권고를 종합하면, 이 보고서의 제안은 협의 절차를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내 해상풍력 거버넌스의 정당성과 예측 가능성,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제대로 설계된 민관협의회는 단순한 행정 기구가 아니라, 적시의 사업 추진과 지속적인 이해관계자 관계, 해상풍력 개발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뒷받침하는 핵심 거버넌스 제도로 이해되어야 한다.

부록 A.정부 제출 조문(안)

A.1 해상풍력발전위원회: 민관협회의의 분쟁조정 방안

A.1.1 배경

해상풍력발전사업 분쟁의 조정

해상풍력법 제17조에는 민관협의회에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분쟁이 발생하면 해상풍력발전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법 제6조 제1항에서 제시한 해상풍력발전위원회가 다루어야 할 심의·의결 사항에는 “해상풍력발전사업과 관련한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법률에 이러한 조항이 담긴 것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해상풍력 사업은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입법 이후에도 이러한 갈등이 끊임없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만약 모든 분쟁을 해상풍력발전위원회가 심의·의결하게 한다면 행정적 비효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부처의 갈등관리

지역의 민관협의회 내부에서 해결되지 않는 갈등은 중앙의 전문적인 갈등 관리 기관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사무의 갈등 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갈등 관리를 위해 마련된 체계적인 절차와 인력을 활용하여 해상풍력 주무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주요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전문적인 조정을 지원할 수 있다.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국책 사업으로서 중앙부처의 주요 사업에 해당된다.

분쟁 조정의 수단과 방법

발전위원회에서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을 다루도록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수단이나 방법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또, 해상풍력법이 도입되었다고 하더라도 해상풍력 사업은 갈등이 첨예하므로 추진과정에서 많은 분쟁이 예상되고, 따라서 모든 분쟁을 발전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추후 법안 개선 또는 시행령 입법절차에서 효율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이때, 전기사업법 제57조에 명시된 전기위원회의 재정 기능(<표 1>)을 참고할 수 있다.

<표 1> 전기사업법상 전기위원회의 재정 기능

“전기사업법” 제57조(전기위원회의 재정)

- ① 전기사업자등 또는 전기사용자 등은 전기사업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2018. 6. 12.>
1. 제15조에 따른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사항
 2. 공급약관에 관한 사항
 3. 제29조에 따른 수급조절 명령에 따른 금액의 지급 또는 수령 등에 관한 당사자 간의 협의에 관한 사항
 4. 제72조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5. 제90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6. 제90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전기사업등과 관련한 분쟁이나 다른 법률에서 전기위원회의 재정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 ② 전기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전기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대하여 재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④ 전기위원회가 재정을 한 경우 그 재정의 내용에 대하여 재정서의 정본(正本)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른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이 취하(取下)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그 재정의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3. 30.>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3. 30.>
- [전문개정 2009. 5. 21.]

A.1.2 현재 법안

현재 해상풍력법 제17조에서는 민관협의회는 분쟁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발전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대통령령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제7조 제9항에서는 실무위원회를 두어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검토 조정하도록 하고, 경미한 사항은 직접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당 조항을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해상풍력법상 실무위원회 규정과 민관협의회 분쟁 조정에 관한 조항

“해상풍력법”

제7조(위원회 구성·운영)

⑧ 위원회의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⑨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본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검토·조정
2.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심의·의결

⑩ 그 밖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민관협의회의 구성·운영)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분쟁의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A.1.3 개선안**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재정기능 마련**

법에서 발전위원회에 부여한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의결” 권한을 신청을 받아 조정 또는 결정을 해줄 수 있는 재정 기능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전기사업법 제57조 규정을 참고하여 해상풍력법 시행령에 <표 3>과 같은 재정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 해상풍력 발전사업에서 재정이 필요한 분쟁은 아직 구체적 유형에 따른 분류가 어려우므로, 개정 절차가 비교적 까다롭지 않은 대통령령의 별표 또는 시행규칙에 담을 필요가 있다. 필수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항목으로 대통령령에 명시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표 3> 발전위원회의 재정 기능의 시행령 조문**“해상풍력법 시행령” 제00조(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재정)**

① 이해당사자는 해상풍력사업과 관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전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발전위원회는 재정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주무부처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③ 발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발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대하여 재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당사자에게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른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이 취하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그 재정의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A.1.4 기대효과

갈등관리의 전문성 강화

개선안에서는 갈등 예방 및 해결 전문가가 참여하는 주무부처의 갈등관리 심의위원회의 활용을 제안한다. 갈등 예방·해결 분야와 환경·에너지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는 분쟁의 원인과 영향, 이해관계 구조를 보다 전문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는 분쟁의 원인과 당사자를 정확히 파악하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단순한 논의를 넘어, 분쟁 당사자 및 원인,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전위원회에 제공함으로써, 발전위원회는 더욱 심도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재정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처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은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수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행정자원의 효율적 활용

현재 해상풍력 사업은 이해관계자 간의 첨예한 갈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해상풍력법이 도입되더라도 모든 분쟁을 상급 기구인 해상풍력발전위원회에서 직접 처리하거나 별도의 조직을 신설할 경우 행정적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비해 개선안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주무부처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지원을 받으면, 서로 다른 법률에 따른 중복 행정을 예방할 뿐 아니라 이미 수행된 갈등영향분석 결과를 활용할 수 있어 보다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갈등 해결 절차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

기존 법안은 분쟁 조정에 관한 구체적인 수단이나 방법이 명시되지 않아 갈등 발생 시 절차의 불확실성이 컸다. 하지만 개선안은 전기사업법의 재정 기능을 참고하여 분쟁 조정 절차를 명확히 제시하고,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1차적인 분쟁 검토 및 조정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이해당사자들이 분쟁 해결

과정과 최종 결정에 대해 예측 가능성을 갖게 하여 법안에 대한 신뢰를 높인다. 나아가, 재정 결정에 불복하여 6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은 분쟁 해결의 법적 효력을 강화하여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A.2 기본설계안 공개 및 의견수렴 절차

A.2.1 배경

기본설계안의 공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해상풍력법 제16조에 따라 기본설계안이 수립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통보를 받은 지자체 의 장은 통보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민관협의를 진행하기 전 기본설계안을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에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일련의 과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법률이 시행되기 전 해당 내용과 절차가 미리 구성될 필요가 있다.

의견수렴 절차에 대한 참고 법령

시행령 관련 내용을 구성할 때는 다음 세 법률의 공청회 및 의견수렴 절차를 참고할 수 있다: ① 전기사업법상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의 공청회 절차, ②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성 평가 결과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③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이다.

<표 4>는 이들 법률의 의견수렴 절차를 정리한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과 환경영향평가 초안의 의견수렴 절차는 동일하고,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 따른 초안의 의견수렴 절차와 유사하므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의견수렴 절차만을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 타법률의 의견수렴 절차 검토

법령명

의견수렴 절차

전기사업법 및 시행령

(법 제25조의2, 시행령 제16조의2) 사업예정자의 의견청취

-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기초조사와 의견청취 실시 및 결과 제출기한을 기본계획 수립 3개월 전까지 사업예정자에게 알려야 함
- 발전사업 예정자는 해당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 기초조사를 시행하고 지역주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한 의견청취를 실시해야 함
- 의견청취를 위해 지역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공지할 것
- ① 해당 발전사업의 개요 ② 기초조사의 결과 ③ 의견제출의 시기 및 방법

(법 제25조 2항, 시행령 제15조) 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

- 기본계획 수립시에는 공청회로 의견을 수렴한 후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
-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면 진행하지 않아도 됨
 - ① 이해관계자 등의 방해로 공청회가 개최되지 못한 횟수가 2회 이상
 - ② 공청회가 개최되었으나 이해관계자 등의 방해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 이 경우 일간신문 및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 아래 사항을 게재하여 의견을 수렴해야 함
 - ① 공청회의 미개최 사유
 - ② 기본계획안의 열람방법
 - ③ 의견제출의 시기 및 방법 등

(법 제25조 4항) 통보

- 기본계획이 확정된 경우 이를 공고하고 관계기관 장에 통보

환경영향평가법 및
시행령

(법 제13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의견수렴

-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후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함
-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크거나 환경영향이 클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관계 전문가 등 주민이 아닌 의견도 들어야 함

평가서 초안 공람	- 초안 제출 후 10 일 이내, 전국 일간지와 지역 일간지 각각 1 회 이상 공고하고, 주민이 20 일~40 일 범위에서 공람 할 수 있도록 공람함 -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공람 기간 및 장소, 의견의 제출방법 및 시기를 내용으로 포함 - 행정기관의 장은 온라인에도 이를 공고 및 공람해야 함 ① 행정기관 및 관할 지자체의 정보통신망 -> 평가서 초안 요약문 포함할 것 ②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 평가서 초안을 포함할 것
↓	
설명회 개최	- 공람 기간 내에 계획 수립 행정기관 장이 개최 - 여러 시·군·구에 겹치는 경우 각각의 지역에서 진행원칙

법령명

의견수렴 절차

	- 설명회 7 일 전까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사업개요, 설명회 일시 및 장소를 1 회이상 공고
↓	
의견수렴	- 초안 공람이 끝난 후 7 일까지 의견 제출 가능 - 공청회 개최 요구 등 포함
↓	
공청회 개최	- 다음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 ①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 명 이상인 경우 ②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 명 이상이고,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총수의 50% 이상인 경우 - 개최 14 일 전까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개발 기본계획 개요, 공청회 일시 및 장소 등을 1 회 이상 공고 - 공청회 후 7 일 이내 지자체 장에 결과 통지
↓	
의견수렴 결과 공개	- 주민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를 전략환경영향 평가서의 협의 요청 전 14 일 이상 게시해야 함 - 게시 장소: 지자체 및 행정기관 정보통신망, 환경영향 평가 정보지원시스템

(법 제14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의견수렴 절차의 생략

- 아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설명회 및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음
- ① 설명회가 주민 등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 ② 공청회가 주민 등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2회 이상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 이 경우 온라인 설명회 또는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함
- ① 설명회: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사유 및 설명자료 열람방법을 공고하고 지자체와 행정기관 정보통신망,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사유 및 설명자료 게시
- ② 공청회: 공청회를 생략한 사유, 의견제출 시기 및 방법,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

A.2.2 현재법안

현행 해상풍력법에서는 민관협의회 전 기본설계안을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하고,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열되 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표 5>).

<표 5> 해상풍력법상 기본설계안의 공개절차

“해상풍력법” 제17조(민관협의회 구성·운영) 중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민관협회의회의 협의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설계안을 어업인, 주민 등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이 열람하게 하고,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A.2.3 개선안**기본설계안에 대한 공개 및 의견수렴절차**

기본설계안에 대한 공개 및 의견수렴절차는 추후 입법될 시행령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의견수렴 절차에 포함할 내용을 <표 6>에 제안하였다. 기존 법률들과 달리 관할 지자체의 웹사이트에는 지역주민·어민의 이해를 돕는 설명자료도 공시하도록 하는 제안을 포함하였다.

<표 6> 해상풍력 기본설계안의 공개 및 의견수렴

법령명	기본설계안의 공개 및 의견수렴
해상풍력법 시행령	기본설계안의 내용 - 법 제16조 제1항의 6에 따른 지역 내 이해관계자 수용성 확보 계획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함 ① 지역상생 계획 및 방안 초안 ② 사업 예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이익공유 방안 초안 ③ 커뮤니케이션 전략 및 갈등조정 매뉴얼 - 법 제16조 제1항의 7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다음 내용을 포함함 ① 민관협회의 위원 후보 명단 및 기초자료 ② 예상 갈등 쟁점 및 대응방안 - 주무부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이해관계자 수용성 확보 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조사 및 민관협회의 위원 후보자 리스트, 예상 갈등 쟁점 및 대응방안을 작성하도록 해야 함 기본설계안의 의견수렴 - 기본설계안을 통보받은 지자체의 장이 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기본설계안을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함 - 공개 시 공람의 기간,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야 하며, 공청회 또는 설명회나 의견제출의 방법 등을 포함해야 함 의견수렴 절차의 생략 - 아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설명회 및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음 ① 설명회가 주민 등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② 공청회가 주민 등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2회 이상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 이 경우 온라인 설명회 또는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법령명

기본설계안의 공개 및 의견수렴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

해상풍력법

시행규칙

전문기관의 역할

- 지정된 전문기관은 주민·어업인, 지자체·어민단체·수협, 시민사회단체, 관련 전문가 등 주요 이해관계자 조사와 사회영향평가를 진행하여야 함
- 전문기관은 위에서 명시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민관협의회 위촉 후보자를 구성하여 위원 정수의 2~3배로 구성하여 지자체 장에게 제출해야 함
- 전문기관은 구성된 후보자리스트에 이해관계자의 사업에 대한 찬반, 이해관계자 유형 등을 명시하여야 함

기본설계안의 의견수렴

-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의견수렴 절차는 다음과 같음

기본설계안공개	- 기본설계안을 통보받은 후 10 일 이내, 전국 일간지와 지역 일간지 각각 1 회 이상 공고하고, 주민이 20 일 이상 공람 할 수 있도록 해야함 -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공람 기간 및 장소, 의견의 제출방법 및 시기를 내용으로 포함 - 지자체의 장은 온라인에도 이를 공고 및 공람해야 함 ① 관할 지자체의 웹사이트, 해상풍력입지정보망 -> 기본설계안 설명자료 포함할 것 ②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통신망 -> 기본설계안 포함할 것 - 지자체의 장은 앞서 명시한 방식 외에도 현수막, 지역 게시판, 수협·어촌계 사무실,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공개 방식을 마련해야함
↓	
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	- 공람 기간 내에 지자체장이 개최 - 여러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 각각의 지역에서 진행원칙, 지자체장 간 협의를 통해 통합하여 진행 가능 - 진행 7 일 전까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사업개요, 설명회 일시 및 장소를 1 회이상 공고
↓	
의견수렴	- 초안 공람이 끝난 후 7 일까지 의견 제출 가능
↓	
의견수렴 결과 공개	- 주민 의견 수렴 결과를 민관협의 전 14 일 이상 게시해야 함 - 게시 장소: 지자체 웹사이트, 기후부와 해수부 정보통신망

A.2.4 기대효과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와 수용성 제고

기본설계안의 공개와 체계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대통령령과 시행규칙에 명문화함으로써, 어업인, 주민, 지역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사업 초기 단계부터 정보에 접근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특히 관할 지자체 웹사이트를 통한 별도의 설명자료 제공은 기술적·전문적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단순한 찬반 구도를 넘어 구체적 개선방안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수용성을 높이는 기반이 될 것이다.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기본설계안 공람, 설명회·공청회 개최, 의견 제출, 의견수렴 결과 공개의 전 과정을 법령에 근거해 표준화하여, 이해관계자 간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행정기관의 자의적 절차 생략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또한 설명회·공청회 미개최 시 대체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외부 방해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 두었다. 이러한 절차적 투명성은 분쟁 발생 시 사업자와 행정기관 모두에게 정당성을 확보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A.3 민관협의회 구성

A.3.1 배경

민관협의회 구성시점

법 제16조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기본설계안을 수립하거나 확정된 기본설계에서 중요한 사안을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지자체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이를 통보받은 관할 지자체 장은 기본설계안을 통보받은 후 3개월 이내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해야 한다.

민관협의회 위원 구성

법에서는 민관협의회 위원 구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민관협의회 총 위원 수, 위원 참여 대상, 위원 위촉 방법 등을 결정해야 한다. 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협의의 효율성과 주민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A.3.2 현재 법령

해상풍력법에서는 여러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도록 하여 민관협의회를 구성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표 7>).

<표 7> 해상풍력법상 민관협의회 구성

“해상풍력법” 제17조(민관협의회 구성·운영) 중

① 시·도지사(예비지구가 동일한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 두 개 이상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해역에 걸쳐 있는 경우)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예비지구가 단일한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해역에 위치한 경우)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어업인단체, 주민대표, 관계 전문가,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대표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지구가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에 위치하거나,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해역에 걸쳐 있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 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시·도지사를 결정한다.

1. 기본설계안에 관한 사항

2. 발전지구의 지정·변경지정·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3.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의 인근 주민 또는 어업인을 포함한 주민참여 이익공유 사업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4. 수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해관계자 수용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6조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간 안에 민관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민관협협의회 구성·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A.3.3 개선안

시행령에서 협의회 구성인원이 과다할 경우 협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최대 인원수를 25명으로 제한하고, 참여자들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최소 20명으로 하한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단, 해상풍력 발전 지역의 사정이 각기 다르므로 구체적인 인원수는 관할 지자체의 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복수의 지자체가 참여하는 경우 25~30명 내외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민관협협의회 구성 비율을 정부위원 25%, 전문위원 25%, 민간위원 50%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정부위원은 지자체 및 관계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 민간위원은 주민 대표 및 어민 대표, 전문위원은 갈등조정, 해양환경, 수산업 등 관련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한다. 이때, 전문위원의 전문분야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협의회의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한편, 지자체장이 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특정 입장을 대변하는 인물 위주로 협의회가 구성될 가능성이 있어,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이상의 내용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각각 담을 내용을 나누어 <표 8>에 나타내었다.

<표 8> 민관협의회의 구성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구분	내용
해상풍력법 시행령	위원정수 -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2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 - 단, 복수의 지자체가 참여하는 경우 25명 이상 30명 내외로 구성 가능 - 구체적인 위원 수는 관할 구역의 범위 및 이해관계자 수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할 것 - 민관협의회의 구성 비율을 정부위원 25%, 전문위원 25%, 민간위원 50% 내외로 함. 단, 위원 유형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는 인원의 범주는 시행규칙에서 정할 수 있음 - 또한 정부위원의 경우 2개 이상의 관할 지자체가 포함될 때는 광역지자체 공무원이,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 관할 해양수산청이 참여하도록 함 위원의 위촉방식 - 협의회의 위촉은 제3의 전문기관이 이해관계자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후보자군을 추천하고, 지자체장은 후보자 명단을 검토하여 위원을 위촉해야 함 -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
해상풍력법 시행규칙	위원의 위촉 - 지자체장이 위촉하는 전문위원은 전문기관이 제출한 명단을 바탕으로 갈등관리전문가, 지역기반의 민간환경단체, 해상풍력 관계 전문가를 포함하여 임명해야 함 - 지자체장이 민간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제출받은 민관협의회 위촉 후보자 목록에 명시된 사항을 바탕으로 찬반의 비율, 이해관계자 유형을 고려하여 민관협의회 위원을 위촉해야 함. 이때, 찬반의 비율을 비슷한 수로 하여야 함 - 지자체장이 위촉하는 정부위원은 지자체에서 사업 인허가, 협의, 보상, 주민 소통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 또는 과장으로 함

A.3.4 기대효과

대표성과 균형성을 확보한 협의회 구성

위원 정수 범위를 시행령에 명시하고, 정부위원·전문위원·민간위원의 비율을 명시함으로써 협의회 구성의 과대·과소 문제를 방지하고 각 이해관계 집단의 균형 있는 참여를 보장할 수 있다. 특히 전문위원의 전문분야를 갈등관리, 환경, 해상풍력 등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전문성과 중립성을 강화할 수 있으며, 찬반 비율을 고려한 민간위원 구성은 협의 과정에서 특정 입장에 편향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투명하고 공정한 위원 위촉 절차 마련

제3의 전문기관이 이해관계자 분석을 바탕으로 후보군을 추천하고, 지자체장이 해당 후보군에서 위원을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위원 선발 과정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특정 이해관계자 또는 단체의 영향력에 의한 편중 구성을 방지하고, 협의회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전문위원에 포함해야 하는 전문가 유형을 시행규칙에서 정하여 협의회 전문성과 중립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한다. 아울러 민간위원 구성 시 이해관계자 유형과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함으로써 협의회가 실질적인 협의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행정 효율성과 사업 수용성 제고

정부위원을 해당 지자체의 관련 부서장급 공무원으로 지정하고, 광역·기초 지자체 또는 해양수산청 등 관할 행정기관을 상황에 따라 참여시키도록 함으로써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인다. 동시에 이해관계자 전반이 고르게 참여하는 구조는 초기 단계에서 갈등을 완화하고 사업 추진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기반이 된다.

A.4 민관협회의의 운영

A.4.1 배경

민관협회의의 구성 시점

법 제16조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기본설계안을 수립하거나 확정된 기본설계에서 중요한 사안을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지자체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이를 통보받은 관할 지자체 장은 기본설계안을 통보받은 후 3개월 이내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운영 방식이 아직 결정되지 않아, 추후 시행령 입법 과정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협회의 결정 방법

현재 법안에는 협의결과를 어떻게 결정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추후 시행령에서는 협의회를 누구의 주도로 운영할 것인지, 협의 결과를 어떻게 도출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특히, 의사결정 방식과 의결정족수 처리 방안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교착상태에 빠진 경우를 대비하는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A.4.2 현재 법령

현행 해상풍력법상에서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표 7>).

A.4.3 개선안

의결의 방식과 회의 운영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회의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중립적인 갈등관리 전문가나 전문 퍼실리테이터, 전문위원이 사회자로서 회의를 주관하도록 해야 한다. 최종적으로는 구체적인 협의사항을 논의하되 최종 의사결정 방식으로 표결을 명시하고, 전문 진행자를 활용하려는 경우 회의 운영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의결 방식 및 회의 운영에 있어 ‘의결 없는 합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교착상태에 대비한 표결 절차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이상의 내용을 구현하기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다음 내용을 <표 9>에 제시하였다.

<표 9> 민관협의회 운영을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구분	내용
해상풍력법	위원장의 위촉
시행령	- 민관협회의회의 위원장은 위촉된 민관협회의 지자체의 장이 정부위원 중 1명으로 지명하도록 함

구분

내용

- 다수의 지자체가 예비지구·송전선로에 포함되는 경우 2인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1인은 반드시 전문위원 중에서 선출함

위원장의 역할

- 위원장은 민관협의회 회의의 소집하고 주재함
-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안건을 표결에 부칠 수 있음

회의의 소집

- 정기회의는 분기에 1회 위원장이 소집해야 함
- 수시 회의는 현안이 발생하였을 때 위원장 또는 협의회 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 소집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이 참석하여야 개의할 수 있음

위원회의 의결

- 의결 정족수는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함
- 의결을 통해 결정된 사항은 민관협의회 공식적인 의견으로 함

중앙부처의 공무원의 배석

- 기후부나 해수부 공무원은 민관협의회 또는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민관협의 과정에 배석할 수 있음. 단, 이 경우 발언권은 가지나 협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표결권은 갖지 않음

민관협의회 협의기간

- 민관협의회 기본설계안에 대한 협의 기간은 기본 6개월로 하고,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연장할 수 있음

민관협의회 위원 임기

-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관할지자체 또는 상위 의사결정기관의 결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
- 위원은 연임이 가능
- 위원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협의회 의결을 거쳐 가능함. 단, 이 경우 과반의 출석, 출석위원의 3분의 2를 의결정족수로 함
- 교체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함

**해상풍력법
시행규칙**
위원장의 역할

- 위원장이 민관협의회 표결에 부칠 수 있는 안건은 다음과 같음
- ① 민관협의회 특정 안건이 교착상태에 빠진 경우 해당 안건
- ② 민관협의회 분쟁이 커져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재정 요청
- ③ 민관협의회 협의 결과에 대한 승인
- ④ 기타 협의회 위원이 요청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부처 공무원의 배석

- 시행령에서 민관협의회 요청이 있는 경우란 중앙부처 공무원의 배석이 필요하다고 민관협의회 위원장이 요청한 경우를 의미함
- 민관협의회 위원장은 중앙부처 공무원의 배석이 필요한 사유를 해상풍력발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 해상풍력발전위원회는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사유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정하여 민관협회에 배석하게 하여야 함

A.4.4 기대효과

회의 운영의 전문성과 중립성 강화

민관협의회 위원장을 정부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필요 시 갈등관리 전문가나 전문 퍼실리테이터를 회의 진행자로 두는 구조는 회의의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한다. 이는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회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발언권 편중, 회의 주도권 독점, 절차적 불공정성 등의 문제를 예방한다. 특히 전문 퍼실리테이터는 갈등 완화 기법과 의사소통 조율 기술을 활용해 논의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으며, 전문위원의 중립적 위치는 특정 이해관계자에 치우치지 않는 합리적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한다. 그 결과, 회의 전 과정에서 전문성과 중립성이 확보되고, 협의 결과에 대한 신뢰가 향상된다.

명확한 의사결정 절차를 통한 갈등 해소 촉진

의결 정족수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규정하고, 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교착상태가 지속될 경우 표결로 전환하는 절차를 마련하면, 의사결정의 불확실성과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논의가 무기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갈등이 장기화되기 전에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게 한다. 특히 표결 요건을 높게 설정함으로써 단순 다수결이 아닌, 가능한 한 광범위한 동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운영되며, 이는 결정의 정당성과 수용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중앙부처와의 유기적 연계 및 행정 지원 강화

기후에너지환경부나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배석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민관협의회 논의 중 필요한 정책 해석, 행정 절차 안내, 법령 적용 판단 등을 실시간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현장에서 제기되는 쟁점과 행정기관의 대응 사이의 시차를 줄이고, 협의 결과가 법령과 정책에 부합하도록 보장한다. 나아가 중앙부처 공무원이 배석하되 표결권은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논의 과정에서의 중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전문 행정지원 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운영기간과 기한 설정을 통한 효율성 제고

민관협회의회의 기본설계안에 대한 협의결과 통보 기간을 기본 6개월로 설정하고,

1회에 한해 최대 6개월만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은 협의체의 활동에 명확한 시간적 경계를 부여하는 장치이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회의 장기화에 따른 의사 결정의 지연을 방지하고, 주어진 기간 내에서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논의를 진행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또한 기한이 정해져 있으면 의제 선정, 자료 준비, 이해관계자 협의 등 모든 절차가 일정에 맞춰 진행되어 사업 추진 일정 전반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A.5 민관협의회의 협의 결과 공개 및 의견수렴

A.5.1 배경

민관협의회 협의결과의 통보

현재 법안은 협의 결과가 정해지면 이를 해상풍력발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에서는 구체적인 협의 결과 통보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필요시 발전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추후 제정될 시행령에서는 통보 기간과 연장 사유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또한, 협의 결과를 정해진 기간 내에 어떻게 도출할지에 대해서도 결정할 필요가 있다.

협의의 기한

기존 지자체 조례 또는 정책에 따라 운영되어 온 민관협의회의 협의기간은 보통 2년간 운영하되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민관협의회 운영 이전 단계인 입지정보망 구축, 예비지구 지정 등에서 환경성과 어업피해 등에 대하여는 이미 여러 차례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해상풍력법의 입법 목적인 효율적인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에 부합하는 협의회 운영 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대표성 보완을 위한 협의결과의 공개

현재 법안에서는 민관협의회의 협의 결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상풍력발전위원회에 통보하는 것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지자체에서 민관협의회 운영 시 협의회에 참여하는 이들의 대표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며, 이는 지역 갈등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민관협의회 대표성을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협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 공개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사전 회의자료 공개, 회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회의록 공개, 주요 의사결정 사항만을 담은 결과 공개 등 어느 수준까지 공개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한편 단순한 공개를 넘어서 공개된 협의회 결과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대표성을 보완하는 수단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A.5.2 현재 법안

현재 해상풍력법에서는 민관협회의 협의 결과를 발전위원회에 통보하고, 분쟁이 발생하면 발전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을 뿐 정보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담고 있지 않다(<표 10>).

<표 10> 민관협의회 결과의 통보

“해상풍력법” 제17조(민관협의회 구성·운영) 중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민관협회의 협의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 결과를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협의하여 통보기한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분쟁의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A.5.3 개선안

정보의 공개 및 투명성 강화

정보공개 및 투명성 강화에 대해서는 협의회 논의 과정과 결과가 공개될 필요가 있다. 추후 해상풍력법에는 민관협의회 결과의 공개에 관한 조항을 넣고, 시행령에서 그 구체적인 방법과 수단을 결정해야 한다. 이때, 구체적인 정보공개 방법은 <표 4>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개 절차를 참조하여, 민관협의회 결과에 대한 공청회나 설명회 개최와 같은 내용도 담을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제안 내용은 <표 11>에 제시하였다.

<표 11> 민관협의회 결과의 공개 및 의견수렴에 관한 제안

법령명

민관협의회 결과의 공개 및 의견수렴

해상풍력법

“해상풍력법” 제17조에 민관위원회의 협의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항 추가

해상풍력법
시행령

민관협의회 결과의 공개	- 민관협의회 협의가 완료 이루어지면 바로 전국 일간지와 지역 일간지 각각 1 회 이상 공고 - 관할 지자체의 장은 웹사이트에도 이를 공고 및 공람해야 함 - 공개 자료에는 협의회 회의록과 안건 설명자료, 의견의 제출방법 및 시기를 포함 - 구체적인 내용과 방식은 시행규칙에 위임 - 이해관계자가 7 일 이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 요구 포함)
↓	
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	- 공청회 또는 설명회의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 명 이상인 경우 지자체의 장은 민관협의회 결과 통보 후 1 개월 이내에 이를 진행해야 함 - 진행 7 일 전까지 일간신문과 지자체 웹사이트에 일시 및 장소를 공고
↓	
의견수렴 결과 제출	- 지자체의 장은 공청회 또는 설명회의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해상풍력발전위원회에 협의회 결과와 함께 제출해야 함 -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주민이 제출한 결과를 협의회 결과에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 공청회 또는 설명회 개최 요건이 성립하였더라도, 주민 등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1회 이상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진행하지 않을 수 있음

해상풍력법
시행규칙

협의 결과의 공개

- 공개 대상 자료는 지자체 홈페이지와 협의회 정보공개 창구에 공개
- 공개 자료는 주민이 지속적으로 열람 가능하도록 함
- 개인정보 및 기밀사항 등 공개가 부적절한 자료는 비공개 처리하고 비공개 사유를 공개자료에 명시
- 발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의록에는 익명을 사용할 수 있음

공개 자료의 범위

- 공개 대상 자료는 최종 회의록 및 안건 설명 자료로 함
- 공개하는 회의록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모든 협의회에 대해 작성해야 함
 - ① 회의일시와 장소
 - ② 참석 위원 수와 명단
 - ③ 논의 안건과 설명
 - ④ 주요 발언과 요지
 - ⑤ 합의 및 의결에 관련된 사항

법령명

민관협의회 결과의 공개 및 의견수렴

- 단, 각 회의에 대해 참석 인원의 실명 공개 여부를 묻고, 실명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익명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음

A.5.4 기대효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로 인한 신뢰도와 수용성 제고

민관협의회 결과의 의무적 공개, 공람·의견제출 창구 운영, 공청회·설명회 개최 요건의 명문화는 협의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대표성 논란을 보완한다. 이를 통해 협의회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주민·어업인도 공식 채널을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최종 통보 전에 지역사회와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다. 이러한 구조는 결과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사업 추진의 사회적 수용성을 강화하며, 분쟁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일정 관리와 행정 효율성 제고

결과 통보기한 설정과 연장 1회 제한, 사유·절차 명시는 협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예측 가능한 일정을 제공한다. 공개·의견수렴·보고서 작성의 단계가 명확히 정렬되면서 불필요한 회의와 중복 절차가 줄어들고, 행정 자원 활용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또한 기한 준수에 대한 책임성이 강화되어 사업 추진 전반의 속도와 일관성이 유지될 것이다.

운영 안정성과 책임성 확보

공개 범위·방식, 공청회 대체 절차, 의견 반영 여부의 문서화 의무를 명문화하면, 향후 감사나 사후평가에서 절차 준수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행정기관과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위원회 심의 시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A.6 해상풍력법 및 하위법령 개선(안) 3단표

이 부록의 조문안은 시행령(2026년 3월 24일 제정) 입법예고 이전과 그 기간 중에 작성되어 정책결정권자에게 제출한 것이다. 그 제언의 기록이자 가이드라인 개발과 향후 개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여기에 수록한다.

A.6.1 해상풍력발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민관협회의 분쟁조정 방안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제17조(민관협회의 구성·운영)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분쟁의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제00조(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재정) ① 이해당사자는 해상풍력사업과 관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전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발전위원회는 재정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주무부처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③ 발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발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대하여 재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당사자에게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른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이 취하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그 재정의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A.6.2 기본설계안 공개 및 의견수렴 절차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제16조(기본설계의 수립·확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예비지구를 대상으로 다음 각	제00조(지역 내 이해관계자 수용성 확보 계획의 내용)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 내 이해관계자 수용성	제00조(전문기관의 역할) 시행령 00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설계안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본설계를 확정한다. 확정된 기본설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예비지구의 명칭·위치·면적 2. 해상풍력발전시설의 배치 및 용량 3.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시행방법 4. 전력계통 연계방안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5. 해양 환경성·해상교통 안전성·군사작전 영향성·국가유산 영향성 등 사전조사 계획 6. 계획입지 지역 내 이해관계자 수용성 확보 계획 7. 그 밖에 예비지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확보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역상생 계획 및 방안 초안 사회영향평가 결과 커뮤니케이션 전략 예상 갈등 쟁점 및 대응 방안 제00조 (예비지구에 관한 추가사항) 법 제16조제1항제7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민관협의회 위원 후보자 명부 민관협회의의 운영계획 제00조(전문기관의 지정 등)① 주무부처는 시행령00조에 따른 지역 내 이해관계자 수용성 확보 계획의 수립과 시행령00조에 따른 예비지구에 관한 추가사항 준비를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전문기관은 지역 내 이해관계자 수용성 확보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민관협의회 위원 후보자 명부와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주무부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어업인단체, 주민대표,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 등 주요 이해관계자 조사 및 사회영향평가 제1호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민관협의회 위촉 후보자를 구성하되, 해당 후보자는 위원 정수의 2배 이상 3배 이하의 범위로 구성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것 제2호에 따른 후보자 명부에는 각 후보자의 사업에 대한 찬반 여부, 이해관계자 유형 등을 명시할 것
제17조(민관협의회 구성·운영) 중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민관협회의의 협의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설계안을 어업인, 주민 등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이 열람하게 하고,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00조(기본설계안의 공개 및 의견수렴)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기본설계안을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공람의 기간·장소·방법을 명시하여야 하며, 공청회 또는 설명회의 개최 방법, 의견 제출의 방법 등	제00조(기본설계안의 공람 및 공고)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설계안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전국 일간지와 지역 일간지에 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20일 이상 공람하여 주민과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제1항의 공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공람 기간 및 장소 의견 제출 방법 및 시기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구체적인 사항은 주무부처의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공고와 함께 해상풍력입지정보망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본설계안 및 설명자료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생략할 수 있다. 설명회가 주민 등의 방해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공청회가 주민 등의 방해로 2회 이상 개최되지 못하거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방식 외에도 현수막, 지역 게시판, 수협·어촌계 사무실,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공람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생략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 공청회·설명회를 개최하거나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00조(공청회 또는 설명회 개최)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람 기간 내에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 각 지역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 간 협의하여 통합 개최할 수 있다. ③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개최일 7일 전까지 전국 일간지와 지역 일간지에 각 1회 이상 사업 개요, 개최 일시 및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00조(의견 제출 및 결과 공개) ① 주민은 공람 기간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렴한 의견을 민관협의회 개최일 14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기후부 및 해수부의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00조(설명회·공청회 생략 시 조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령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제00조제3항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생략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국 일간지와 지역 일간지에 사유 및 의견 제출 방법을 1회 이상 공고 지방자치단체, 산업부 및 해수부의 정보통신망에 사유, 의견 제출 방법, 설명자료를 게시 의견 제출 시기와 방법, 설명자료 열람 방법 등을 전국 일간지와 지역 일간지에 각 1회 이상 공고

A.6.3 민관협회의회의 구성 및 운영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제17조(민관협회의회 구성·운영) ① 시·도지사(예비지구가 동일한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 두 개 이상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해역에 걸쳐 있는 경우)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예비지구가 단일한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해역에 위치한 경우)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어업인단체, 주민대표, 관계 전문가,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대표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협회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지구가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에 위치하거나,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해역에 걸쳐	제00조(민관협회의회의 구성) ① 민관협회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25명 이하로 한다. 다만, 복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25명 이상 30명 이하로 할 수 있다. ② 구체적인 위원 수는 관할 구역의 범위 및 이해관계자 수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③ 민관협회의회의 구성 비율은 정부위원 25%, 전문위원 25%, 민간위원 50%를 기준으로 하되, 위원 유형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는 인원의 범주는 기후부령으로 정한다. ④ 정부위원의 경우 2개 이상의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배타적 경제수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해양수산청의 공무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제00조(민관협회의회 위원회 위촉 기준 및 절차)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갈등관리 분야의 전문가 해당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민간환경단체의 대표 또는 구성원 해상풍력발전 분야의 전문가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민간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민관협회의회 위촉 후보자 명부에 명시된 사항을 바탕으로 찬성·반대 비율과 이해관계자 유형을 고려하여 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찬성·반대 비율은 가급적 비슷한 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있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수부장관과 협의 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시·도지사를 결정한다. 1. 기본설계안에 관한 사항 2. 발전지구의 지정·변경지정·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3.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의 인근 주민 또는 어업인을 포함한 주민참여 이익공유 사업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4. 수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해관계자 수용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6조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간 안에 민관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민관협의회 구성·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위촉 ① 민관협의회 위원 위촉은 기본설계안에 포함된 제3의 전문기관의 이해관계자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후보자군을 추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후보자군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추천 절차 및 위원의 구체적 위촉 방법에 관한 사항은 기후부령으로 정한다. ③ 민관협의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가능하다. ④ 협의회 의결이 있는 경우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정부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 인허가, 협의, 보상, 주민 소통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 또는 과장으로 하여야 한다.
	제00조(위원장의 역할) ① 민관협의회 위원장은 정부위원 중 1명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한다. ② 위원장은 민관협회의	제00조(위원장이 표결에 부칠 수 있는 안건)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안건을 민관협회의 표결에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③ 위원장은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안건을 표결에 부칠 수 있다. 제00조(민관협의회 의 소집) ① 정기회의는 분기에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수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협의회 위원의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 소집한다. 제00조(민관협의회 의 의결) ① 민관협의회 의 의결 정족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② 의결을 통해 결정된 사항은 민관협의회 의 공식적인 의견으로 본다. 제00조(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의 배석) ① 주무부처 소속 공무원은 민관협의회 또는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민관협의 과정에 배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석한 공무원은 발언권을 가지되, 협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표결권은 가지지 않는다. 제00조(민관협의회 의 협의 및 운영 기간) ① 민관협의회는 기본설계안을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전위원회에 협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연장할 수 있다.	부칠 수 있다. 민관협의회 의 특정 안건이 교착상태에 빠진 경우 민관협의회 의 분쟁이 확대되어 해상풍력발전위원회에 재정을 요청하는 경우 민관협의회 의 협의 결과를 승인하는 경우 민관협의회 의 위원이 요청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조(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의 배석 절차) ① 시행령 제00조제1항에서 “민관협의회 의 요청이 있는 경우”란,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배석이 필요하다는 협의회 위원의 요구가 있고 이를 위원장이 수용한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민관협의회 위원장은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의 참석 요청서를 작성하여 해상풍력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서에는 배석이 필요한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해상풍력발전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요청서에 명시된 사유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정하여 민관협의회 에 배석하게 하여야 한다.

A.6.4 민관협회의의 협의 결과 공개 및 의견수렴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제17조(민관협의회 구성·운영)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민관협회의의 협의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 결과를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협의하여 통보기한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분쟁의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제00조(민관협의회 결과의 공개 및 의견수렴)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민관협회의의 협의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전국 일간지와 지역 일간지에 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고에는 민관협회의의 주요 의결사항의 개요, 의견 제출 방법 및 시기를 포함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자가 7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공고와 함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게재하고, 필요한 경우 공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00조(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행령 제00조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자 중 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민관협회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개최일 7일 전까지 전국 일간지 1회 이상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일시 및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 요건이 성립하였더라도 주민 등의 개최 방해 등으로 1회 이상 개최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제00조 (협의 결과의 공개) ① 협회의의 공개 대상 자료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협의회 정보공개 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개된 자료는 주민이 지속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영업상 비밀 등 공개가 부적절한 자료는 비공개로 처리하고, 그 비공개 사유를 공개자료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발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의록에는 익명을 사용할 수 있다. 제00조 (공개 자료의 범위) ① 공개 대상 자료는 최종 회의록 및 안건 설명 자료로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모든 협의회에 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참석 위원의 수 및 명단 3. 논의 안건 및 그 설명 4. 주요 발언 및 그 요지 5. 합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 ③ 회의 참석 위원의 성명 공개 여부는 회의 개최 전에 위원의 동의를 받아 결정하며,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익명으로 처리한다.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있다.

제00조(의견수렴 결과의 제출)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한 경우,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민관협의회

결과와 함께 해상풍력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주민이 제출한

의견을 취합하여 민관협의회

결과에 첨부하고

해상풍력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록 B.민관협의회 운영

가이드라인(안)

B.1 총칙

B.1.1 배경

해상풍력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핵심 재생에너지원으로 국내외에서 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어민 등 이해관계자의 공간 이용권·생계 기반·환경 영향과 직결되면서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사업 지연 및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민관협의회는 단순한 보상 기구가 아니라, 장기적 공존·지역 상생·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 핵심 기제로 기능한다.

B.1.2 목적과 의의

민관협회의회의 궁극적 목적은 해상풍력 개발 과정에서 주민·어민·지자체·사업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제도적으로 반영하고, 상생 가능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있다. 민관협의회는 갈등을 사후적으로 수습하는 기구가 아니라, 사전적 예방·상호 이해·지속적 협의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축적하는 과정이다.

민관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 수용성 확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민·어민 참여를 보장하여 불신과 반발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한다.
- 갈등 예방: 갈등이 본격화되기 전, 의제 발굴과 조정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 **상생 모델 구축:** 단기 보상에서 나아가 지역경제·일자리·환경보전 등 지속가능한 상생 구조를 설계한다.
- **정책 연계:** 협의회 운영 결과를 법·제도·지자체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B.1.3 적용 범위 및 법적 근거

이 가이드라인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법)에 근거한다. 특히 제16조(기본설계의 수립·확정 등) 및 제17조(민관협의회 구성·운영)에 따라, 기본설계안 공개·의견수렴 절차와 민관협회의의 구성·운영을 구체화하는 것을 적용 범위로 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다음 주체가 활용할 수 있다.

- **지자체:** 민관협의회 구성·운영을 책임지는 주체
- **주민·어민 및 단체:** 협의회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주체
- **사업자 및 관련 기관:** 협의 논의와 상생방안 마련에 협력하는 주체
- **정부 및 공공기관:** 제도 운영·지원 및 정책 연계의 주체

특정 사업자나 지자체에 한정되지 않고, 해상풍력 개발이 추진되는 모든 지역에서 민관협의회 운영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다.

B.1.4 기본 원칙

협의회는 지역사회와 해상풍력 사업의 상생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의 기본 원칙을 따른다.

상호 신뢰의 원칙

- **위원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논의한다.**
- **위원은 합의된 결과를 성실히 이행하여 신뢰를 유지한다.**

포용성의 원칙



- 협의회는 실제 이해관계가 있는 다양한 집단을 배제하지 않고 참여시킨다.
- 협의회는 특정 집단에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적으로 의견을 수렴한다.

투명성의 원칙

- 협의회는 모든 자료와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 위원은 협의 내용을 소속 단체에 정확히 공유한다.

적시성의 원칙

- 협의회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
- 협의회는 갈등이 확대되기 전에 사전 논의를 개시한다.

B.1.5 협의 사항

민관협의회에서 다루는 의제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법) 제17조에 따른 법정 의제와 본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권장 의제로 구분된다.

법정 의제 (해상풍력법 제17조)

- 기본설계안에 관한 사항
- 발전지구의 지정·변경 지정·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 주민참여 및 이익공유 사업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수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이해관계자 수용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

가이드라인 권장 의제

- 상생방안 마련: 주민참여, 이익공유,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환경·안전 관리 등을 포괄하는 종합 상생 대책 논의
- 수산업·해양환경 관리: 어업 피해 저감, 공동 조사·모니터링, 해양생태 보전 방안

- 공사·운영 영향 대응: 항로 안전, 소음·탁도, 케이블 매설 등 생활·생업 영향 완화 대책
- 기타 필요 의제: 사업 추진, 협의회 운영 과정에서 갈등의 예방 및 관리,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

B.1.6 용어 정의

본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는 다음과 같으며, 해상풍력법과 산업통상자원부 「주민·어업인과 함께하는 해상풍력발전 안내서」(2023)에 기초하여 정리하였다.

협의 주체 및 조직

- 협의회(민관협의회): 해상풍력법 제17조에 따른 공식 협의 기구로서, 주민·어민 등 이해관계자와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여 의견 수렴·조정·합의를 수행하는 조직
- 지자체: 사업지 관할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로, 예비지구 단계에서 협의회 설치·운영·정보공개를 담당하는 핵심 행정 주체
- 이해관계자: 사업 영향권 내 주민·어민·어촌계·수협·전문가·시민단체 등 협의 대상 주체
- 위원: 의제 심의·의견 제시·합의 형성에 참여하는 협의회 구성원

※ 위원은 성격에 따라 민간위원·정부위원·전문위원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구체적 기준은 제3장에서 다룬다.

- 민간위원: 지역 주민, 어업인 등 지역 이해관계자를 대표하거나 참여하는 위원
- 정부위원: 지자체 및 관계 행정기관 소속으로 협의회 운영과 행정 절차 연계를 담당하는 위원
- 전문위원: 환경·어업·해양공간계획 등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에 기반해

자문과 검토를 수행하는 위원

- 위원장: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합의를 총괄하는 자
- 간사: 협의회 운영을 실무적으로 지원하고 위원 간 소통을 돕는 자
- 사무국: 회의 준비, 자료 관리, 회의록 작성 및 정보제공을 담당하는 지원 조직
- 전문기관: 주무부처가 지정·위탁하여 이해관계자 조사, 후보자 추천, 운영계획 수립 등을 수행하는 기관
- 중재자(조정자): 갈등 상황에서 중립적으로 조정·중재를 수행하는 제3의 전문가 또는 기관
- 분과위원회: 어업·환경·상생방안 등 특정 의제를 심층 검토하기 위해 설치되는 소위원회

회의 운영 관련

- 의제: 협의회에서 논의나 결정을 위해 상정된 사안
- 합의: 충분한 논의 후 이견을 줄이고 도출된 공동의 판단
- 합의문: 합의 내용을 공식 문서로 정리하여 이행 근거로 활용하는 기록문서
- 의결: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규정에 따라 표결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
- 회의록: 회의 일시, 참석자, 의제, 논의 내용, 결정사항을 기록한 공식 문서

해상풍력 사업 관련

- 기본설계안: 해상풍력법 제16조에 따라 작성되는 문서로, 예비지구 명칭·위치·면적, 발전시설 배치 및 용량, 전력계통 연계방안, 환경·어업 조사 계획, 수용성 확보 계획 등을 포함
- 발전지구: 해상풍력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되는 구역으로, 발전사업의 추진 및 협의회 운영의 법적 근거가 되는 지역

- 보상: 해상풍력 발전사업으로 인해 입증 가능한 손실을 입은 주민·어업인에게 지급되는 경제적 대가(단, 보상은 해당 당사자가 경제적으로 이익을 보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설정)
- 지원: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각종 지원사업
-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주민·어업인이 지분·채권·펀드 방식으로 해상풍력 사업에 투자하여 배당·이자 수익을 얻거나,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에 따른 추가 수익을 공유하는 제도
- 상생방안: 보상·지원·주민참여를 포괄하여 사업자·주민·어민·지자체 간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종합 대책. 피해 최소화,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환경보전 및 안전 관리 등을 포함
- 사업자: 해상풍력 발전 사업 시행 주체로서, 발전지구 지정 이후 협의회 안건에 따라 참여하는 이해관계자

B.2 민관협의회 설계

B.2.1 설치 목적 및 필요성

민관협의회는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어민과 행정기관 간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의견을 제도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설치된다.

민관협회의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 절차적 정당성 확보: 기본설계안 수립 후 입지계획 초기 단계부터 주민·어민이 참여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 갈등 관리와 조정 기능: 초기 단계에서 쟁점을 확인하고, 제도적 협의 틀 안에서 갈등을 최소화한다.
- 장기적 상생 기반 마련: 단기적 보상 논의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와의

공존 및 발전을 위한 논의 구조를 형성한다.

B.2.2 설치 절차

민관협의회는 해상풍력법 및 하위 법령에 따라 다음 단계를 거쳐 설치·운영된다.

1. 준비 단계

- 주무부처는 전문기관을 지정해 이해관계자 조사·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기본설계안을 지자체에 통보한다.
- 지자체는 이를 바탕으로 협의회 발족을 준비하며, 본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운영 규정을 마련한다.
- 필요 시 수협, 어촌계 등 지역 조직과 협의하여 기본설계안을 검토하고 초기 의제를 정리한다.

2. 발족 단계

- 지자체는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민관협의회를 발족한다.
- 위원 위촉은 기본설계안 내 후보 명단을 기초로 하되, 지자체가 최종 결정한다. 변경·배제 사유는 기록해 주무부처에 통보한다.
- 지자체 장은 지자체 소속 공무원을 간사로 지정한다.
- 협의회에는 사무국을 설치한다.
- 의제 특성에 따라 한시적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3. 운영 단계

-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논의한다.
- 회의자료 사전 배포, 회의록 작성·공개, 표결 절차 등은 운영 규정에 따른다.
-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관련 전문기관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발전위원회를 통해 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언권만 인정되고 표결권은 없다.

4. 종료 단계

- 합의된 사항은 합의문 또는 권고안으로 채택하고, 이행 주체·기한을 명시한다.
- 미해결 사안은 별도 정리하여 후속 협의·재협의로 연계한다.
- 합의문과 미해결 사안은 함께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한다.

B.2.3 권한 및 한계

권한

민관협의회는 해상풍력 사업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 의제 심의 및 상정: 기본설계안, 발전지구, 상생방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하고 필요 시 새로운 의제를 상정한다.
- 자료 요구 및 전문가 의견 청취: 사업자·지자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합의문·권고안 채택: 논의 결과를 합의문 또는 권고안으로 정리하여 관계기관에 제출한다.
- 이행 점검 및 정보공개: 합의된 사항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 갈등 조정 요청: 협의회 내에서 해결되지 않는 사안은 중재자 또는 전문기관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한계

민관협의회는 협의·권고 기구로서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 법적 권한의 한계: 합의문·권고안은 권고적 효력을 가지나, 인허가·보상

확정 등 법적 최종결정권은 없으며, 이해결 분쟁은 행정적·사법적 절차로 이관된다.

- 대표성의 한계: 위원이 다양한 집단을 대표하더라도 지역 전체 의견을 완전히 대변할 수 없으므로, 공청회·설문조사 등 외부 의견수렴 절차와 병행될 필요가 있다.
- 시간적 제약: 사업 추진 일정과 이해관계자 여건에 따라 충분한 논의 시간이 확보되지 못할 수 있다.

B.2.4 기본설계안 공개 및 의견수렴

기본설계안은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 초기 단계에서 지역사회와 이해관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향후 협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핵심 자료이다.

공개 기한

- 지자체는 주무부처로부터 기본설계안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주민과 어업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자료를 함께 제공한다.
- 공개된 기본설계안은 최소 20일 이상 공람하여 주민과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제출된 의견은 협의회 논의의 근거로 활용한다.

공개 대상

- 주민·어업인: 예비지구 및 송전선로 경과 지역 거주자, 생계·어업활동에 직접 영향을 받는 주민·어업인, 어촌계·수협 등 단체 대표
- 지자체 및 관계 행정기관: 관할 시·군·구청, 시·도청, 주무부처 등
- 기타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 지역 시민사회단체, 학계·연구기관, 해양환경·수산업 분야 전문가 등

주요 내용

기본설계안은 해상풍력법 제16조에 따른 필수사항을 포함하고, 민관협회의의 실질적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권장 자료를 함께 제공한다.

법정 필수사항

- 예비지구 명칭·위치·면적
- 발전시설 배치 및 용량
- 사업 시행방법
- 전력계통 연계방안 및 기반시설 계획
- 해양환경·해상교통·군사작전·국가유산 영향 조사 계획
- 이해관계자 수용성 확보 계획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가이드라인 권장사항

- 수용성 확보 계획의 세부 구성(지역 상생방안, 주민참여·이익공유, 소통 전략 등)
- 사회영향평가 및 이해관계자 조사 결과(전문기관 수행, 지역 특수성 반영)
- 민관협의회 위원 후보 명단 및 기초 자료
- 예상 갈등 쟁점 및 대응 방안

전문기관 역할

- 주무부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사회영향평가 및 이해관계자 조사, 위원 후보자 리스트 작성 등을 지원한다.
- 전문기관은 주민·어업인, 지자체·어민단체·수협, 시민사회단체, 관련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며, 설문·면담·FGI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다.
- 조사과정에서 지자체·어민단체·수협 등 지역 조직의 의견을 반영해 지역 특수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 조사 결과와 후보자 리스트는 기본설계안에 포함되어 지자체에 통보되며, 향후 협의회 구성과 운영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공개 방식

정보 공개는 다음의 모든 방법을 통해 실시한다.

- 온라인 공개: 해상풍력입지정보망 및 지자체 홈페이지에 전문과 요약본 게재, 주민·어업인 이해를 돕는 설명자료 제공
- 언론 공고: 전국·지역 일간지에 최소 1회 이상 게재, 열람 기간·장소·의견 제출 방법 안내
- 현장 게시: 어촌계 사무실·주민센터 등 주민 접근성이 높은 장소에 요약 안내문 게시
- 홍보·미디어 활용: 현수막, 지역 게시판, 수협·어촌계 사무실,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등 생활 밀착형 채널 활용
- 설명회 및 공청회: 공람 기간 내 반드시 개최하며, 일정은 신문·온라인을 통해 사전 공고

B.3 위원 구성

B.3.1 구성 원칙

이해관계자 범주

민관협의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야 대표성과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다. 위원은 공동체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을 원칙으로 하여 다음 범주에서 고르게 선정한다.

- **주민 대표**
 -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 인근 주민과 송전선로 경과 지역에 거주하며, 생활·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주민

- 공동체의 대표, 마을 단위나 지역 자치조직에서 대표성을 가진 인물(예: 통장, 주민자치위원장 등)

● 어민 대표

- 해당 해역에서 면허·허가·신고 어업을 영위하는 어업 공동체의 대표
- 어업인 단체 및 수협 등 어업 관련 조직의 대표자로서 구성원을 대변할 수 있는 인물(예: 어촌계장, 수협 대책위원장 등)

● 지자체 대표

- 관할 시·군·구 및 시·도의 행정 담당자
- 인허가 및 보상 등 사업 관련 부서 책임자

● 정부 및 공공기관 대표

- 주무부처 관계자
- 필요 시 유관 공공기관 관계자

● 전문가

- 갈등관리, 해양환경, 수산업 등 사업 영향과 밀접한 분야 전문가
- 필요에 따라 법률 제도나 사회영향평가 등 관련 분야 전문가

● 시민사회 대표

- 지역 시민단체, 환경단체, 주민자치 관련 단체 등 대표성 보유자

● 사업자

- 발전지구 지정 이후 참여하는 발전사업 시행 주체
- 기본적으로 민관협의회에 사업자를 포함하지 않으나, 사업자 선정 이후 필요 시 사업자를 포함하여 추가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

위원 정수 및 비중

● 위원 정수

- 민관협의회는 정부위원, 민간위원, 전문위원으로 구분하며, 전체 20~25인 내외로 구성한다.
- 복수 지자체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협의체의 대표성과 균형성 확보를 위해 25~30인 내외로 구성한다.

● 정부위원

- 지자체 및 관계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 에너지, 환경, 해양수산 등 관련 부서가 적절하게 참여하도록 고려한다.
- 전체 위원 중 25% 내외로 구성한다.

● 민간위원

- 주민 대표 및 어민 대표로 구성한다.
- 실질적인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하며, 전체 위원회의 50% 내외로 구성한다.

● 전문위원

- 갈등조정, 해양환경, 수산업 등 관련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한다.
- 전체 위원 중 25% 내외로 구성한다.

B.3.2 위원 선정 절차

민관협의회 위원의 선정은 대표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절차를 따른다.

1. 이해관계자 조사 및 후보자 발굴

- 주무부처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은 사회영향평가와 이해관계자 조사를 병행하여 수행한다.
- 조사 과정에서는 사업이 지역사회·경제·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주민·어민·지자체 등 주요 이해관계자를 식별한다.
- 조사 방법에는 현장 조사, 문헌 검토, 설문조사, FGI(집단심층면접) 등이 포함된다.
- 이해관계자의 입장(찬·반·중립)과 의견, 영향 범위, 대표성 등을 기록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범주별 잠재 후보군을 작성한다.

2. 후보자 명단 작성

- 전문기관은 범주별로 위원 정수의 2~3배 규모로 후보자 명단을 작성한다.
- 명단에는 이해관계자 유형, 사업에 대한 입장, 추천 사유를 포함한다.
- 후보자 명단은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요 시 공개하거나, 비공개 사유를 명시한다.

3. 지자체 검토 및 조정

- 지자체장은 전문기관이 제출한 후보자 명단을 검토한다.
- 필요 시 읍·면·동, 수협·어촌계 등 지역 조직과 협의하여 후보자 구성을 조정할 수 있다.
- 후보자 조정 또는 배제 사유는 문서화하여 주무부처에 통보한다.

4. 최종 위촉

- 지자체장은 위원 정수에 맞추어 최종 위원을 위촉한다.
- 위원 위촉 과정은 서면 기록으로 남기고, 협의회 출범 시 함께 공개한다.
- 위원 위촉 시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을 고려한다.

5. 위원장 선출



- 위원장은 1인을 원칙으로 하며, 지자체 장이 정부위원 중에 위촉한다.
- 다수 지자체가 예비지구·송전선로에 포함되어 대표성의 균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
- 공동위원장 체제일 경우 1인은 반드시 전문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B.3.3 위원 선정 기준

민간위원 선정 기준

민간위원은 주민·어업인, 지역단체 등 직접적 영향을 받는 집단의 대표로서,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지역 대표성: 해당 지역 주민·어업인 중 공식적 대표성을 가진다. (예: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통장, 어촌계장, 업종별 어업단체장, 수협 임원, 협동조합 대표, 청년 대표 등)
- 입장 균형: 사업에 대한 찬성·반대·중립 입장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한다.
- 공공성 및 참여 의지: 지역사회 이익과 상생 발전에 기여하려는 의지를 가진다.
- 소통 역량: 다른 위원과 원활히 협의하고 협업할 수 있는 소통 능력을 갖춘다.
- 다양성 고려: 성별·연령·생계 유형 등 지역사회의 구성을 반영할 수 있는 다양성을 가진다.

전문위원 선정 기준

전문위원은 협의회 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선임하며,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전문성: 해양환경, 수산업, 재생에너지, 갈등관리, 법률 등 협의 의제와 밀접한 분야의 지식을 보유한다.

- **중립성:** 사업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객관적·독립적 입장에서 판단한다.
- **갈등관리 역량:** 갈등 상황에서 합리적 조정·중재 능력을 발휘한다. 필요 시 퍼실리테이터 등 전문 조정자를 포함할 수 있다.
- **정책·제도 연계 경험:** 정부·지자체 연구과제 수행, 공공 협의회 참여, 제도 개선 활동 등 정책 반영과 연계된 경험을 가진다.

B.3.4 역할 구분

민관협회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각 참여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한다.

위원장

-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 의제를 조정하고 합의 도출을 총괄한다.
-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안건을 표결에 부친다.
- 공정한 입장에서 위원 간 균형 있는 논의를 보장한다.

위원

- 협의 대상 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합의 과정에 성실히 참여한다.
-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의견을 대변하되, 전체 협의회회의의 공동 합의를 존중한다.
- 필요 시 분과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여 심층 논의에 기여한다.

간사

- 회의 준비, 안건 정리, 회의 진행 지원, 회의록 작성을 담당한다.
- 회의 절차와 기록 관리 등 협의회 운영을 행정적으로 지원한다.
- 위원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도와 논의 진행을 지원한다.

사무국

- 협의회 운영 전반을 총괄하며, 회의 운영, 자료 수집·관리, 회의록 작성·공개를 담당한다.
- 위원 간 상시 소통을 지원하고, 의견 조율 및 1차 갈등 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 협의회 운영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며, 결정사항의 이행을 지원한다.
- 지자체 내 전담부서 또는 전문 위탁기관이 운영을 맡는다.

분과위원회

- 특정 의제(어업, 환경, 지역상생, 안전 등)를 심층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필요 시 설치한다.
- 분과위원회는 조사·검토 결과를 본 협의회에 보고하며, 최종 의사결정은 본 협의회가 담당한다.

B.3.5 위원 임기 및 교체

임기

- 위원의 임기는 협의회 존속기간과 동일하게 2년으로 한다.
- 협의회가 관할 지자체 또는 상위 의사결정기구의 결정에 따라 연장될 경우, 위원의 임기도 동일하게 연장한다.

연임 및 승계

-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 당연직 또는 직위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경우, 해당 직위가 변경되면 위원직도 함께 변경하며, 후임자가 잔여 임기 동안 위원직을 승계한다.
- 임기 만료 후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여 협의회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한다.

교체 절차

- 위원 교체에 필요한 경우 협의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확정하며, 출석하지 않은 위원은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 위원은 심신장애, 직무상 비위, 청렴성 훼손, 직무태만·품위손상, 회의 방해, 불건전한 언행 등으로 직무 수행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해촉할 수 있다.
- 교체된 위원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 동안 활동하되, 위원들의 합의에 따라 연임이 가능하다.
- 교체 사실과 사유는 주무부처에 통보하여 상위 행정기관이 적법성을 검증하도록 한다.

B.4 회의 운영

민관협회의회의 회의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협의 결과의 신뢰성을 높인다.

B.4.1 운영 개요

회의 소집

- 협의회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지자체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소집할 수 있다.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해야 개의할 수 있으며, 정족수 미달 시 회의가 성립되지 않는다.
- 회의는 개최일 7일 전까지 일시·장소·주요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 긴급한 경우 통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나, 사유와 경위는 반드시 회의록에 기록한다.
- 불참하는 위원이 대리인 참석을 요청할 경우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며, 소집 통보는 대리인에게도 발송한다.

회의 종류 및 주기

- 협의회는 정기회의, 수시회의, 분과회의로 구분한다.
-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이상 개최하며, 현안 발생 시 수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특정 의제에 대해 심층 논의가 필요한 경우 분과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회의 형태 및 참석 범위

- 회의는 대면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감염병 확산, 기상 악화, 원거리 이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비대면(온라인)으로 개최할 수 있다.
- 협의회에 선정된 위원만 참석한다. 다만 필요 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참고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킬 수 있다.
- 불참이 불가피한 경우 위원이 지정한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언은 가능하나 표결권은 없다.
- 필요 시 퍼실리테이터 등 중립적인 지원 인력을 참여시켜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할 수 있다.

협의회 존속 기간

- 기본설계안에 대한 협의결과 통보 기한을 6개월로 한다. 단, 필요시 6개월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협의회는 해체되지 않고 사업자 선정 시점까지 존속한다.
- 필요 시 사업자를 포함하여 추가 협의를 수행한다.

예산 관리

- 협의회 및 지원기관(필요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한다. 단, 상황에 따라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회의 참석 수당은 민간위원 및 전문위원에게만 지급하며, 교통비와

표준임금을 고려해 합리적 수준으로 책정한다.

- 회의 장소 대관, 필요 물품 구입 등 운영 관련 비용은 예산 계획에 따라 집행하고, 모든 내역은 기록·보관한다.

B.4.2 의제 관리와 의사결정

의제 발굴 및 사전 절차

- 의제는 위원 누구나 제안할 수 있으며, 간사와 사무국은 제안된 의제를 정리해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 중요하거나 복잡한 사안은 분과회의에서 먼저 검토해 쟁점을 정리한 뒤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 상정된 의제와 관련된 자료는 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제공하여 충분한 검토 시간을 보장한다
- 기본설계안 검토 등 법정 의제와 함께, 지역 상생·이익공유, 수산업·해양환경 보전 등은 반드시 다루어야 할 핵심 의제로 관리한다.

의제 조정 및 상정

- 위원장은 제안된 안건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검토해 회의 안건으로 확정한다.
- 안건의 우선순위는 위원 간 합의로 정하며, 갈등 가능성이 큰 사안은 먼저 논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의사결정 원칙

- 위원장은 중립적 입장에서 논의를 이끌고, 충분한 토론과 조정을 통해 공동의 결론을 도출한다.
- 합의가 장기간 도출되지 않을 경우, 위원장은 안건을 표결에 부칠 수 있다.
- 표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며, 출석하지 않은 위원은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 사업 변경, 상생방안 확정, 분쟁 조정 등 중대한 사안은 반드시 표결 절차를 거친다.

B.4.3 정보공개 및 의견수렴

회의록 작성 및 관리

- 협의회는 모든 회의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하며, 회의 일시·장소·참석자·논의 안건·주요 발언 요지·합의 및 의결 사항을 포함한다.
- 회의록은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 위원 전원에게 배포하며, 위원은 수정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위원 의견을 반영하여 회의 종료 후 14일 이내 최종본을 확정하고 보관·관리한다.
- 관련 자료(위원 명단, 운영 규약, 합의문, 약정서, 사진, 게시자료, 언론 기사, 지자체 의견 조희 문서 등)는 체계적으로 보관·관리하며, 필요 시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정보 공개

- 최종 회의록 및 안건 설명자료는 지자체 홈페이지 및 협의회 정보공개 창구에 공개한다.
- 공개된 회의록은 주민이 지속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개인정보 및 기밀사항 등 공개가 부적절한 내용은 비공개 처리할 수 있으며, 사유를 명시한다.
- 매 회의 사전에 기명 회의록 작성에 동의하는지 확인하고, 동의하지 않는 발언자는 익명으로 기재한다.
- 회의 참여자는 협의회에서 비공개로 결정된 사항이나 회의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위원장은 비밀 유지 동의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다.

의견 수렴

- 민간위원은 자신이 대표하는 마을·어촌계·수협 등 공동체에 협의 내용을 공유하고, 해당 공동체 내부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협의회에 전달한다.
- 협의회는 공청회, 설명회, 간담회, 온라인 창구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 민관협의회 구성 이전에 기본설계안 수립 단계에 이해관계자 조사를 할 때 지역 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관협의회 운영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 제출된 의견은 간사와 사무국이 취합하여 협의회에 보고하며, 필요 시 의제로 상정할 수 있다.
- 의견 반영 여부와 그 사유는 반드시 공개하여 주민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B.5 갈등 관리

B.5.1 주요 갈등 유형

민관협의회 운영 과정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의견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갈등을 조기에 인식하고 유형별로 정리해 두는 것은 협의회의 효율적 대응에 필요하다.

사업 영향 관련

- 어업권 및 수산자원 이용권 침해 논란
- 발전지구·송전선로 경과 지역 주민의 생활권 및 재산권 침해 우려
- 해양환경 훼손 및 경관 저해 문제

절차와 참여 관련

- 위원 구성의 공정성 및 대표성 부족

- 정보 비대칭과 자료 공개 미흡
- 협의 과정의 투명성 부족

상생·보상 관련

- 보상 수준과 범위에 대한 이견
- 주민참여사업을 포함한 이익공유 방식 논란
- 지역발전 효과와 일자리 창출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

협의회 운영상

- 의제 설정 및 논의 방식에 대한 이견
- 장기적 협의 지연 및 합의 불발
- 회의 운영 절차 위반 및 위원 간 불신

B.5.2 갈등 해결 프로세스

민관협의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단계적·체계적 절차에 따라 해결해야 하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신뢰 기반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

협의회 내부 조정

- 갈등은 우선 협의회 내 토론과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위원장은 갈등 사안이 발생할 경우 의제를 분리해 심층 논의하거나, 중립적 진행자를 지정하여 균형 있게 토론을 이끈다.
- 민간위원은 자신이 대표하는 공동체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다른 집단과의 절충점을 찾도록 노력한다.

발전위원회 재정 절차 이관

- 협의회에서 해결되지 않은 갈등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회부한다.

- 심의위원회는 분쟁 당사자, 원인, 영향을 검토하고 조정안을 제시한다.
- 심의위원회에서 해결되지 않은 사안은 발전위원회 재정 절차로 이관한다.
- 재정 절차는 ‘재정 신청 → 당사자 통지 → 의견진술(서면·대면) → 발전위원회 재정 → 재정서 송달 → 불복 절차(행정심판·소송)’의 순서로 진행한다.
- 발전위원회 재정은 협의회 합의를 보완하는 법적 절차로서, 당사자는 재정 결과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한다.

갈등 해결의 기본 원칙

- 협의회는 합의를 최우선으로 하되, 장기화되거나 격화되는 경우 제도화된 절차를 통해 신속히 처리한다.
- 모든 절차는 중립성·공정성·투명성을 준수해야 한다.
- 갈등 해결 결과는 합의문 또는 재정서로 문서화하여 공개한다.

B.5.3 민원 처리 체계

민관협의회는 주민·어민의 목소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반영하기 위해 민원 처리 체계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개별 민원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갈등이 장기화되는 것을 예방한다.

민원 접수 창구

- 협의회는 주민·어민의 민원·피해 제기를 공식적으로 접수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한다.
- 접수 방식은 서면 제출, 온라인 게시판, 현장 방문 접수 등으로 병행하며, 지자체 홈페이지에도 안내한다.

처리 절차

- 접수된 민원은 사무국이 접수일자와 내용을 기록하고, 성격에 따라 분류한다.

- 단순 질의·정보 요구는 간사가 신속히 답변한다.
- 갈등 사안은 협의회 의제로 상정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검토·분석하여 협의회에 의견을 제시한다.
- 협의회에서 해결되지 않는 경우, 「해상풍력법」에 따른 발전위원회 재정 절차로 연계한다.

회신 및 공개

- 협의회는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1차 회신을 제공하고, 처리 결과를 문서화하여 민원인에게 통지한다.
- 부득이한 경우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 주요 민원은 협의회 정보공개 창구에 요약본을 게시하여 다른 주민들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민원인의 이름과 세부 주소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

B.6 상생방안

상생방안은 민관협회의 핵심 산출물로, 주민과 사업자가 함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반드시 논의되어야 한다. 협의회는 단순한 의견 조율을 넘어, 지역과 사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체적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B.6.1 상생방안 개요

상생방안은 지역사회와 사업이 조화롭게 발전하기 위해 협의회가 설계하는 구체적 실행 장치를 뜻한다. 여기에는 단순한 보상뿐 아니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편익, 공동체 강화, 장기적 지역 발전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상생방안의 정의

상생방안은 크게 보상, 주민참여·이익공유, 지원사업으로 구분한다.

- **보상:** 사업으로 인한 불편이나 피해를 보전하는 경제적 대가
- **주민참여·이익공유:** 주민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거나 수익을 공유하는 방식
- **지원사업:** 사업자가 지역 발전을 위해 임의로 추진하거나, 제도·공모를 통해 연계되는 프로그램

지원사업의 유형

상생방안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설계될 수 있다.

- **경제적 지원:** 일자리 창출, 지역기업·어업인 우선선정, 소득 증대
- **사회·복지 지원:** 노인·취약계층 돌봄, 교육·장학 사업
- **생활 인프라 개선:** 주거환경 정비, 교통·통신 등 생활SOC 보완
- **환경·안전 대책:** 해양환경 개선, 재난 예방, 어촌·어업 지원
- **공동체 기반 조성:** 주민이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마을 기금 조성·운영

기대효과

- **주민 수용성 확보:** 사업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갈등을 예방한다.
-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과 소득 창출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한다.
- **공동체 강화:** 주민 참여와 협력을 통해 장기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한다.
- **지속가능성 제고:** 지역과 사업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확립한다.

B.6.2 상생방안 도출 절차

상생방안은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절차를 거쳐 마련되어야 하며, 주민 수요와 지역 특성을 객관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절에서는 상생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기본 과정을 다섯 단계로 제시한다.

1. 기초조사 및 수요조사

- 전문기관은 주민 인터뷰, 설문조사, 현지조사 등을 통해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상생 의제를 확인한다.
- 이 과정은 협의회 설치 준비 단계와 병행되며, 단순히 대표성 확보에 그치지 않고 상생 수요를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둔다.

2. 지역력 분석

- 전문기관은 인구, 산업, 생활여건, 안전, 환경 등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지역의 발전 잠재력과 취약성을 종합적으로 진단한다.
- 이러한 데이터 기반 분석은 협의회 논의가 주관적 요구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고, 합리적 의사결정의 근거를 제공한다.

3. 상생방안 후보 도출

- 전문기관은 기초조사 및 지역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역 파급효과와 기여도를 고려한 예비 상생방안을 도출한다.
- 소득증대, 노인복지, 교육지원, 생활인프라 개선 등 다양한 분야의 잠재적 대안을 폭넓게 검토한다.

4. 최종안 확정

- 협의회는 실행가능성, 자원 조달 가능성,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예비안을 평가한다.
- 협의회 논의를 거쳐 최종 상생방안을 합의·확정한다.

5. 세부 실행계획 수립

- 전문기관은 확정된 상생방안을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발전시킨다.
- 자원 확보 및 예산 편성, 추진조직 구성, 성과관리 체계 등을 포함하여 실제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정리한다.

B.6.3 상생방안 의견수렴 절차

상생방안은 도출된 후보안을 바탕으로 협의회 내부 검토와 지역사회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 과정은 투명성과 참여성을 담보하는 핵심 단계로,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1. 협의회 내 토론

- 실행가능성, 재원 마련 가능성, 파급효과 등 핵심 요인을 중심으로 위원들이 심층 토론한다.
- 필요 시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병행하여 객관성을 강화한다.

2. 주민 의견수렴

- 설명회, 공청회, 간담회, 설문조사 등 주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 수렴 과정과 결과는 문서화하고, 적절한 채널을 통해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3. 조정 및 합의

- 협의회는 내부 검토와 주민 의견을 종합하여 안건을 조정한다.
-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기준으로 확정한다.

4. 확정 및 공개

- 최종 합의된 상생방안은 협의회 의결로 확정한다.
- 확정된 방안과 의사결정 과정은 온·오프라인을 병행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 신뢰를 확보한다.

B.6.4 상생방안 실행 및 성과관리

상생방안은 합의에 그치지 않고, 실행과 성과관리를 통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와 장치를 갖춘다.

1. 실행계획 수립

- 확정된 상생방안을 토대로 예산, 일정, 담당 주체를 구체적으로 설정한다.

- 자원 확보와 집행 절차를 명확히 하여 실행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한다.

2. 추진 조직 운영

- 필요 시 전담조직 또는 공동 운영체계를 마련하여 집행을 관리한다.
- 지자체·주민대표·사업자가 함께 참여하여 협치 기반을 확보하고 책임성을 높인다.

3. 이행 점검 및 성과관리

- 사업 추진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주요 결과를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
- 성과관리는 객관성·투명성·지속성·참여성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 수용성을 확보한다.
- 기금 조성 규모, 일자리 창출, 주민 만족도, 갈등 감소, 환경 개선 등 성과지표를 설정한다.

4. 평가 및 환류

- 성과평가는 반기 또는 연 단위로 실시하여 성과와 한계를 종합적으로 진단한다.
- 필요 시 제3자 검증을 도입하여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
- 평가 결과는 주민 설명회·보고서 등을 통해 공개하고, 개선사항은 차기 상생방안에 반영한다.

부록 C.제정 하위법령과의 비교

부록 A의 다섯 개 영역 전반에서 이 보고서 권고의 핵심 구조가 채택되었다. 기한이 명시된 조정 절차, 주민 과반 구성, 갈등조정을 포함한 전문가 분야의 명시, 분과위원회, 협의 기한 체계, 협의 결과의 사업자 공모 연계가 그것이다. 주요 차이는 재정 기능, 협의회 결과의 공개, 위촉 및 후보군 절차이며, 뒤의 두 가지는 시행령 제11조 제8항에 따라 제정 예정인 고시에서 다를 여지가 있다.

구분(부록 A 기준)	제정 하위법령 (대통령령 제36216호,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2호, 2026. 3. 26. 시행)	평가	후속 과제 및 이행 층위
1.1 해상풍력발전위원회 회: 민관협의회 분쟁조정 방안(부록 A.1 참조)	제14조(민관협의회 협의사항에 대한 분쟁의 조정)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분쟁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② 위원회는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해당 지자체장에게 권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통지③ 권고를 받은 지자체장은 민관협의회를 다시 개최하여 조정안을 협의하고,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제4조제1항제2호 법 제6조제1항제9호의 분쟁조정 사항 중 경미한 사항으로 인정되어 위원회	부분 채택· 조정 절차와 기한 명시(조정안 권고 45일, 동의 여부 회신 30일): 채택. 절차적 예측 가능성이라는 권고 취지에 부합함· 재정 기능과 60일 합의 간주 효력(표 3): 미채택. 당사자의 소송권에 관계되어 명시적 법률 근거를 필요로 함· 갈등 전문가의 분과 단위 1차 검토: 실무위원회에서 다룸. 경미한 분쟁조정 사항을 실무위원회 소관으로 하고 위촉위원회에 분쟁조정 분야 전문가를 포함함· 주무부처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지원: 미규정· 조정 소요기간을 협의 기간에 산입하도록 하여 조정 신청이 협의 지연 수단으로 쓰이지 않게 함. 다만 조정에 최대 75일이 소요되어 협의 기간을 잠식하는 구조임	재정 기능: 법률 개정 과제(A.1에서 중기 과제로 제시)분쟁조정신청서 서식 등 세부 절차: 기후에너지환경부령갈등관리심의위원회 연계: 운영 실무

구분(부록 A 기준)	제정 하위법령 (대통령령 제36216호,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2호, 2026. 3. 26. 시행)	평가	후속 과제 및 이행 증위
	심의·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하는 사항은 실무위원회 소관제4조제3항제2호 실무위원회 위촉위원은 해상풍력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제13조제3항 분쟁조정에 소요된 기간은 협의 결과 통보기간에 포함하여 산정		
1.2 기본설계안 공개 및 의견수렴(부록 A.2)	제12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민관협의회 협의 전에 (1)기본설계안 (2)열람기간 및 열람방법 (3)의견 제출 방법을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14일 이상 어업인·주민 등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가 기본설계안을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함 ② 기본설계안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에 지자체장에게 의견 제출 가능제10조제2항 기본설계안에 포함할 대통령령 사항은 (1)자연생태·생활 환경성 사전조사 계획 및 저감대책 (2)해상풍력	핵심 채택, 세부 미규정 협의 전 의무 공개와 의견 제출 기간: 채택.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를 함께 규정함· 열람기간: 14일 이상으로, 권고한 20일 이상에는 미치지 못함· 설명회·공청회 절차: 법 제17조제4항이 개최 의무를 두고 있으나 시행령은 열람 절차만 규정함. 개최 시기와 방법, 방해 등으로 무산된 경우의 생략 요건과 온라인 대체 절차는 미규정· 권고한 기본설계안 내용(지역상생 및 이익공유 방안 초안, 커뮤니케이션 전략, 갈등조정 매뉴얼, 위원 후보자 명단, 예상 갈등 쟁점): 미채택. 대통령이 정한 추가 사항은 환경성 사전조사와 실증단지 계획에 한정됨· 전문기관의 이해관계자 조사와 정수의 2~3배 후보자 명단: 미규정· 제출 의견의 처리 결과 공개: 미규정	공개 의무는 채택 사례로 인용설명회·공청회 운영과 무산 시 보완 절차, 의견 처리 결과 공개: 시행령 제11조제8항 고시 및 부록 B 가이드라인기본설계안 내용 보강과 전문기관 절차: 고시 및 운영 실무

구분(부록 A 기준)	제정 하위법령 (대통령령 제36216호,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2호, 2026. 3. 26. 시행)	평가	후속 과제 및 이행 증위
	실증단지 조성·운영 계획(필요한 경우)		
1.3 민관협회의의 구성(부록 A.3)	제11조제1항 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내로 구성. 위원장은 주민·어업인 위원 및 전문가 위원 중에서 호선된 1명과 공무원 위원 중에서 호선된 1명이 공동으로 제11조제2항 위원은 지자체장이 위촉하거나 임명. 어업인단체 대표 및 주민대표(송전선로 경과지 주민대표 포함)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 전문가는 전체 위원의 5분의 1 이상이어야 함. 전문 분야는 에너지·자원, 환경·해양환경, 수산업, 해상교통, 국토이용, 과학·기술, 전력계통, 국방, 회계·금융, 갈등조정 제11조제3항 위촉위원(주민·어업인 및 전문가)의 임기는 2년.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	부분 채택 · 주민·어업인 비중: 채택. 2분의 1 이상 요건은 권고한 50% 내외와 일치함· 전문가 비중: 5분의 1 이상으로, 권고한 25%에 미치지 못함· 위원 정수: 15~25명으로 권고한 20~25명보다 하한이 낮음. 복수 지자체 참여 시 25~30명으로 확대하는 규정은 없음· 전문 분야에 갈등조정 포함: 채택· 위촉위원 임기 2년: 채택· 전문기관 후보군을 통한 위촉과 입장 분석· 찬반 균형 반영: 미채택. 위촉권이 지자체장에게 있어 A.3에서 지정한 대표성 편중 위험이 남음	전문가 비중 25%와 후보군 기반 위촉 절차: 시행령 제11조제8항 고시에서 법정 하한의 범위 안에 권고하고, 세부 절차는 부록 B 가이드라인에 담음
1.4 민관협회의의 운영(부록 A.4)	제11조제4항 회의는 위원장 2명이 공동으로 소집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개최하며, 위원장 2명이 교대로	설계를 달리하여 채택 · 의장: 공동위원장 호선 방식으로, 권고한 지자체 지명 위원장과 설계는 다르나 균형 확보라는 목적은 같음. 전문위원 공동위원장 안이 사실상 실현됨·	공동위원장, 표결, 분과위원회, 공모 연계 조항은 설계상 차이를 밝히며 채택 사례로 인용교착

구분(부록 A 기준)	제정 하위법령 (대통령령 제36216호,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2호, 2026. 3. 26. 시행)	평가	후속 과제 및 이행 층위
	의장이 됨제11조제5항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제11조제6항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음제11조제7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고시하는 바에 따라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지자체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보급사업 실시기관 지원에 준하는 지원 가능제17조제2항제2호 민관협의회의 협의 결과를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공고에 포함할 사항으로 규정	의사결정: 표결이 제도화됨. 다만 개의 정족수가 권고한 재적 과반보다 높은 재적 3분의 2로, 합의 지향에는 부합하나 교착 위험은 커짐· 소집: 재적 3분의 1 요구 요건은 채택. 분기 1회 이상 정기회의는 미규정· 분과위원회: 채택· 협의 결과의 사업자 선정 연계: 채택. 3.3에서 제시한 협의에서 지정, 지정에서 공모로 이어지는 연결 원칙이 조문화됨· 지자체에 대한 주무부처 지원 근거: 신설· 중립적 진행자 근거, 위원장이 표결에 부칠 수 있는 사유, 중앙부처 공무원 배석 절차, 위원 교체 절차: 미규정(결과 공개는 1.5에서 다룸)	대응과 조문화되지 않은 운영 세부 사항: 시행령 제11조제8항 고시 및 부록 B 가이드라인
1.5 협의 결과의 공개 및 의견수렴(부록 A.5)	제13조제1항 협의 결과 통보기간은 기본설계안을 통보받은 다음 날부터 1년. 다만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자체의 신청으로 예비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개월제13조제2항 통보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법 제17조제5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와 협의하여 한	기한 체계는 채택, 공개는 미채택· 통보 기한과 연장 한도, 연장 협의 절차의 명시: 구조는 권고대로 채택. 다만 기본 기한이 권고한 6개월이 아닌 1년이며, 6개월은 지자체 신청으로 예비지구가 지정된 경우에 한정됨· 법률 수준의 협의 결과 공개 의무(표 11): 미채택· 시행령 수준의 공표(전국· 지역 일간지, 홈페이지, 공람): 미규정· 시행규칙 수준의 공개 방식(정보공개 창구, 상시 접근성, 최종 회의록과 안전	기한 체계는 채택 사례로 인용법률 수준의 공개 의무: 향후 법률 개정회의록· 자료 공개 방식, 익명 처리 장치, 결과에 대한 의견수렴: 시행령 제11조제8항 고시(협의회 운영 사항)와 부록 B 가이드라인의 실무 절차

구분(부록 A 기준)	제정 하위법령 (대통령령 제36216호,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2호, 2026. 3. 26. 시행)	평가	후속 과제 및 이행 층위
	차레 연장)제13조제3항 위 기간은 분쟁의 조정 등에 소요된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 시행령과 시행규칙 모두 협의 결과와 회의록의 공개, 공개된 결과에 대한 의견수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설명자료로 한정된 공개 범위, 회의록 기재 요건, 사유를 명시한 비공개, 요청 시 발언자 익명 처리): 미규정· 공개된 결과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결과 설명회·공청회): 미규정	

참고: 이 표의 평가는 2026년 7월 15일 기준이다.



Ocean Energy Pathway

오션에너지패스웨이

전 세계 해상풍력의 확산을 앞당기기 위해 활동하는 국제 비영리단체입니다. 에너지 전환을 뒷받침하고 해양생태계의 보전을 촉진하며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각국 정부와 주요 의사결정자에게 독립적인 전문 자문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정책, 산업, 생태계 보전 분야의 글로벌 리더들과 협력하여 해상풍력의 장기적 성장을 위한 지속 가능한 해법을 모색합니다. 영국에 본부를 두고 한국, 일본, 인도, 베트남, 필리핀, 호주, 브라질, 콜롬비아, 멕시코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https://oceanenergypathway.org/>



한국환경정책학회

다양한 정책과제의 기획과 발굴, 연구 용역 수행, 기술 지원과 자문 협력 등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환경, 에너지, 기후변화 정책과 제도 수립 및 이행에도 긴밀하게 협력해 왔습니다.

<https://kepas.or.kr/>

ROOT-ENER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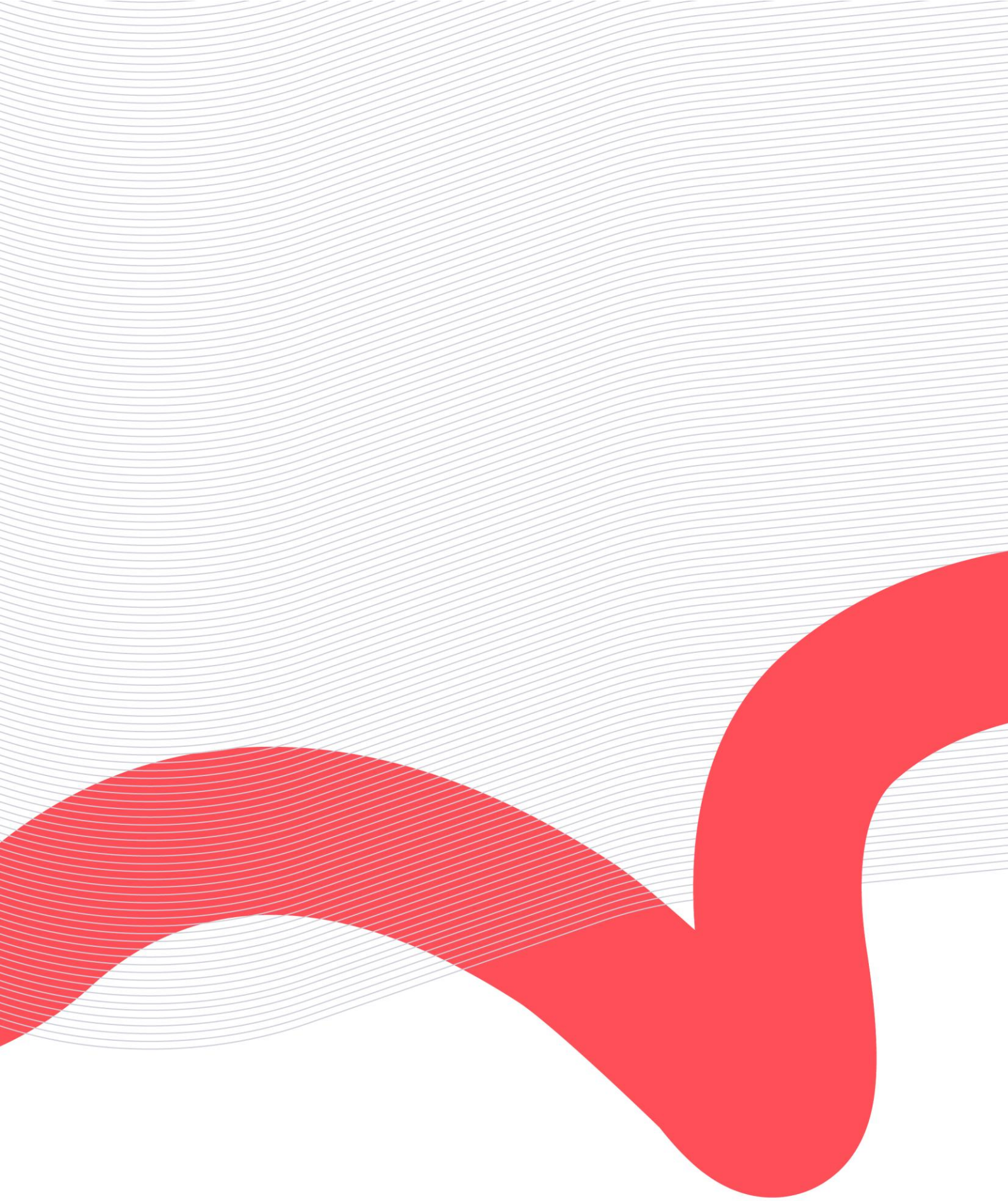
루트에너지

루트에너지는 지역공동체와 협력하여 재생에너지의 확대와 주민수용성 제고를 이끄는 글로벌 사회적기업(B Corp)입니다. 해상풍력을 비롯한 다양한

재생에너지 사업 현장에서 사회영향 조사와 이해관계자 분석을 토대로
민관협의회 등 거버넌스의 구성·운영을 지원하고, 숙의 및 의견수렴 과정을
설계하며, 지역주민이 직접 투자하고 이익을 얻는 커뮤니티 펀딩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정부·지자체·사업자와 지역사회
간의 지속가능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https://rootenergy.kr/>





Ocean Energy
~ Pathway